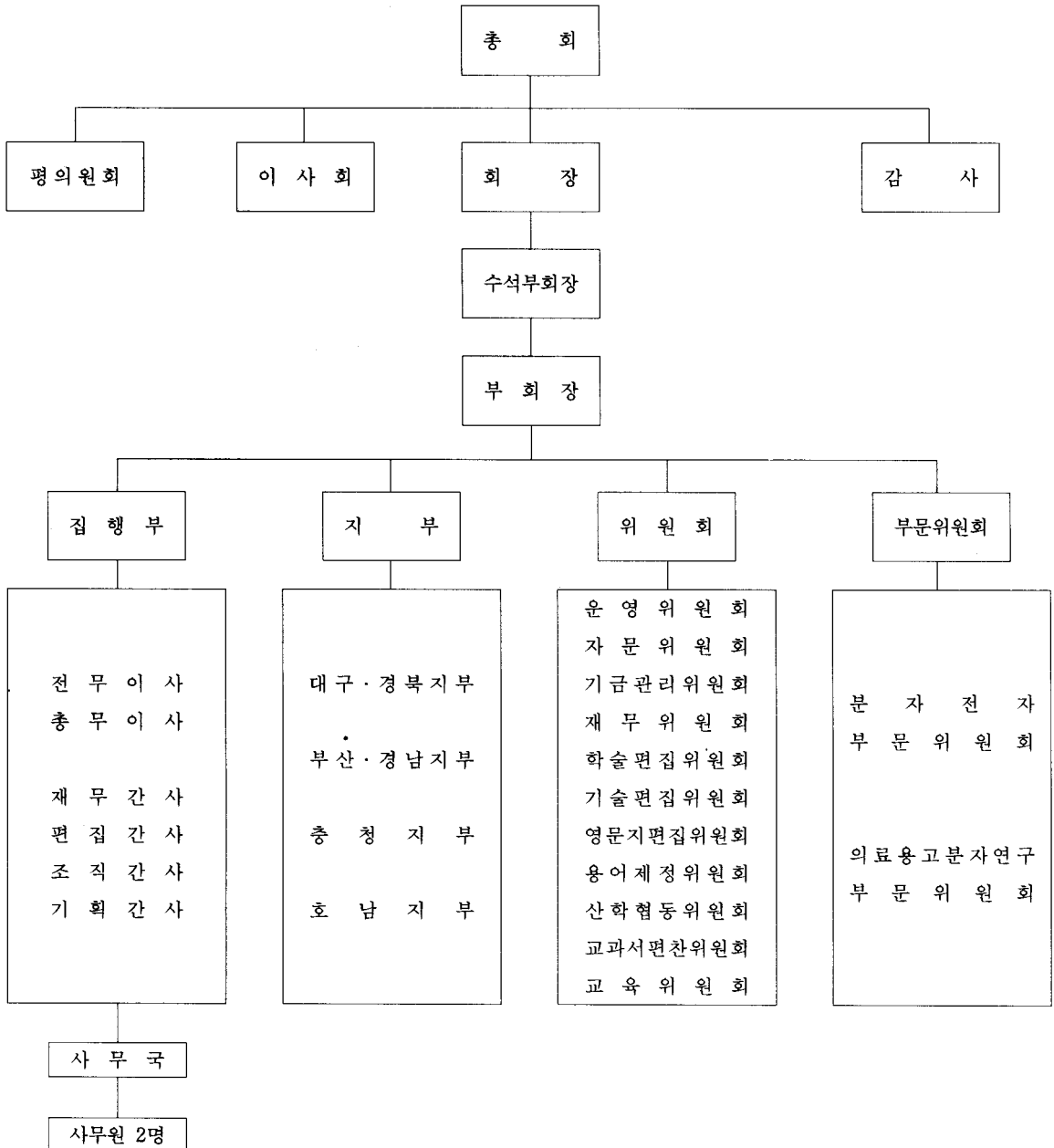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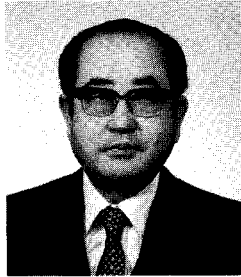


■■ 한국고분자학회 조직표 ■■



역 대 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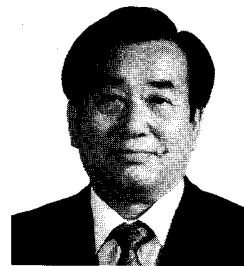
제1대 회장
성좌경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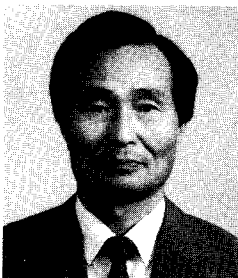
제2대 회장
심정섭 박사



제3대 회장
김원택 박사



제4대 회장
정기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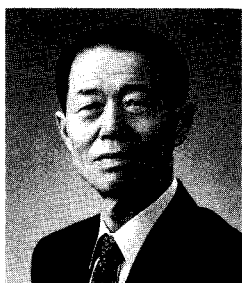
제5대 회장
김점식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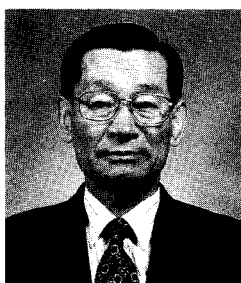
제6대 회장
노익삼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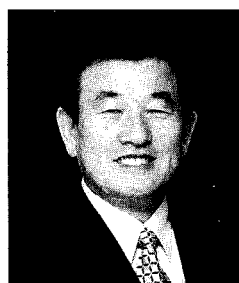
제7대 회장
안태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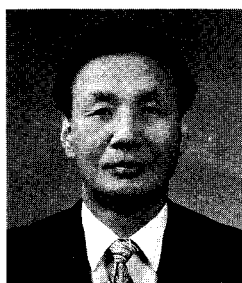
제8대 회장
조의환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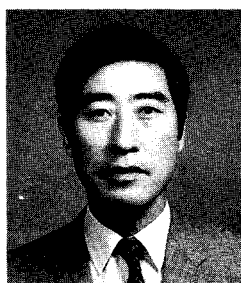
제9대 회장
홍성일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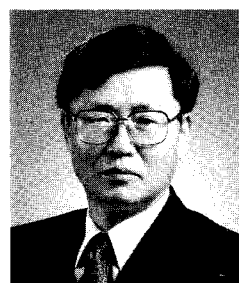
제10대 회장
김은영 박사



제11대 회장
한만정 박사



제12대 회장
김정엽 박사



제13대 회장
이서봉 박사

역 대 임 원

	기 간	회 장	수 석 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전 무	총 무	편 집	재 무	기 획	조 직	평
1대	1976. 9. 8 -1978.12.31	성좌경		심정섭 이형규	김원택 정기현	노익삼	김계용	조의환	홍성일	최남석	장성봉	최규석 김은영 진정일
2대	1979. 1. 1 -1980.12.31	심정섭		강수철 정기현	김원택 변형직	김은영	민태익	진정일	강두환	김성철	강박광	김계용 김순모 노익삼 조의환
3대	1981. 1. 1 -1982.12.31	김원택		변형직 이기동	최삼권 최규석	김계용	홍성일	진정일	강두환	김광웅	김성철	김순모 김은영 김점식 김정엽 이 용
4대	1983. 1. 1 -1984.12.31	정기현		김점식 최근선	노익삼 안태완	김정엽	김광웅	조의환	성용길	임승순	김계용	강두환 김성철 김은영 이동주 한정련 홍성일
5대	1985. 1. 1 -1986.12.31	김점식		노익삼 지동범	조의환 한정련	김계용	김성철 성용길	진정일 홍성일	김영하 김창규	최철립 정경택	임승순 원영무	
6대	1987. 1. 1 -1988.12.31	노익삼		안태완 박천옥 김광웅	맹기석 홍성일	김광웅	구민회 성용길 한정련	김계용 유영학	김성철 이서봉	김은영 조의환	김재문 진정일	김정엽 성재갑 최규석 최은재
7대	1989. 1. 1 -1990.12.31	안태완		조의환 김재문 홍성일	김은영 김계용	이후성	구민회 성용길 최남석	김광웅 신영조	김성철 이서봉	김우식 임성택	김정엽 임용성	맹원기 문탁진 정진철 진정일
8대	1991. 1. 1 -1991.12.31	조의환		김은영 김정엽 신영조 이부섭	김우식 이서봉	김성철	김봉식 이후성	성용길 김광웅	이동호 이해방	조용장 최철립	장용균 진정일	여종기 변재황 조성효 김완영
9대	1992. 1. 1 -1992.12.31	홍성일	김은영	이서봉 최준식 한만정	성용길 조원제	최철립	김영하	김광웅 이해방 진정일	김봉식 이후성	김성철 장용균	김완영 정진철	변재황 여종기 조성효 조용장
10대	1993. 1. 1 -1993.12.31	김은영	한만정	김완영 유영학 한정련	정진철 진정일	김영하	임승순	김광웅 여종기 한영수	김봉식 이장우	김성철 이해방	김충부 이후성	민태익 성용길 조성효 최철립
11대	1994. 1. 1 -1994.12.31	한만정	김정엽	윤대옥 이후성 김우식	민태익 이해방	임승순	강두환	고윤석 성용길 최철립	김광웅 여종기	김기협 정동진	김봉식 정진철	김성철 김은영 조성효 진정일
12대	1995. 1. 1 -1995.12.31	김정엽	이서봉	김연식 조원제 진정일	강박광 김봉식	강두환	조원호	고윤석 김정호 이병형 정동진 김경원	김경원 김기협	김광웅 성용길 이해방 조병욱	김기협 여종기 이호동 최철립	김성철 김은영 이상선 이호설 임승순 권오승
13대	1996. 1. 1 -1996.12.31	이서봉	진정일	성용길 정진철 이덕립	김광웅 이국노	김동국	안광덕	김영하 여종기 정동진 이호설	김우식 이동호 조병욱	김정호 이승조 조원제	박상욱 이종문 이상선	변재황 심홍구 이해방 임승순 이병형 이호동

역 대 간 사

	기 간	전무이사	총무이사	총무간사	재무간사	편집간사	기획간사	조직간사
1대	1987. 1. 1-1988.12.31	김광웅		김상욱	주동준	이후성 안광덕	김낙중 윤진산	김병식
2대	1989. 1. 1-1990.12.31	이후성		안광덕	김낙중	이상원 조원호	노광현 이동호	이광섭 진인주
3대	1991. 1. 1-1991.12.31	김성철		임승순	이두성	강용수 한양규	이상원 진인주 허정림	김동국 이재락
4대	1992. 1. 1-1992.12.31	최철림	김영하		이두성	손태원 이석현	노시대 박오옥 진인주	강용수 장정식
5대	1993. 1. 1-1993.12.31	김영하	임승순		김재진	김진백 박태석 진인주	김중현 유영태 이영철	김진환 박찬언
6대	1994. 1. 1-1994.12.31	임승순	강두환		김정안	이영무 진인주 차국현	김진환 최형진 허완수	공명선 장지영 하기룡
7대	1995. 1. 1-1995.12.31	강두환	조원호		강호중	이영무 이한섭 조재영	강혜정 김동영 김정호 허 탁	이대수 이재홍 하창식
8대	1996. 1. 1-1996.12.31	김동국	안광덕		한양규	김정호 박수영 송기국	강호중 김준경 김철희 장지영 최형기	김성훈 이명훈 채규호

역 대 평 의 원

	기 간	평 의 원
1대	1976. 9. 8- 1979.12.31	강수철 김광웅 김노수 김도심 맹기석 박상호 배기은 백남철 백형배 변형직 서길덕 송승현 심재후 안영옥 안태완 이기동 이부섭 이종희 이학기 정석규 조봉식 한만정 허영우 —이상 23명—
2대	1980. 1. 1- 1981.12.31	강성안 김광웅 김노수 김수권 김용준 김인준 김점식 남상빈 남상은 맹기석 목영일 문탁진 박경재 박덕우 박상호 박영한 박종률 박천옥 배기은 백남철 서길덕 신현주 심재후 안영옥 이기동 이기화 이동주 이부섭 이용균 이 웅 이종희 이진우 이학기 이형규 윤재석 임성택 임용성 장성봉 정갑중 정경택 정석규 최규석 최남석 최병권 최병오 최삼권 한만정 한영진 한유복 한정련 허동섭 허영우 홍성일 황경섭 —이상 54명—
3대	1982. 1. 1- 1983.12.31	강두환 구민회 김광웅 김계용 김봉식 김상욱 김성철 김 양 김원택 김은영 김점식 김정엽 김직태 남상은 노익삼 맹기석 목영일 박대식 박천옥 박홍수 배기은 백남철 변형직 서길덕 성용길 성좌경 신경태 신현주 심정섭 심재후 안태완 유영학 윤재석 이덕표 이동주 이만희 이서봉 이용균 이 웅 이유건 이학기 장성봉 정경택 정기현 정석규 정진철 조원제 조원호 조의환 진정일 최규석 최남석 최삼권 최준식 한만정 한순교 한정련 한형수 허동섭 허영우 홍성일 —이상 61명—
4대	1984. 1. 1- 1985.12.31	강두환 구민회 권기정 김광웅 김계용 김봉식 김성철 김영하 김완영 김우식 김원택 김은영 김재문 김점식 김정엽 김직태 김창규 김척기 남상은 노익삼 노인기 문탁진 맹기석 박대식 박천옥 박종률 변형직 성용길 성좌경 심정섭 심재후 신현주 안태완 유영학 이덕표 이동주 이만희 이서봉 이용균 이 웅 이학기 임승순 임성택 이유건 이관용 이득산 장성봉 정기현 정석규 정진철 조원제 조의환 진정일 장동근 최규석 최근선 최남석 최삼권 최준식 최철립 한만정 한순교 한정련 허동섭 홍성일 —이상 65명—
5대	1986. 1. 1- 1987.12.31	강 관 강두환 강수철 구민회 권기정 김광웅 김계용 김봉식 김상곤 김성철 김영하 김완영 김우식 김원택 김은영 김재문 김점식 김정엽 김창규 김척기 노익삼 노인기 맹기석 문탁진 민병권 박대식 박종률 박천옥 변형직 성용길 성재갑 성좌경 신영조 신현주 심재후 심정섭 안태완 여종기 원영무 유영학 이관용 이기동 이덕표 이동주 이득산 이만희 이서봉 이용균 이 웅 이유건 이학기 이후성 임성택 임승순 장동호 정경택 정기현 정 발 정석규 정정부 정진철 조원제 조의환 지동범 진정일 최규석 최남석 최삼권 최준식 최철립 한만정 한순교 한정련 허동섭 홍성일 —이상 75명—
6대	1988. 1. 1- 1989.12.31	강 관 강두환 강수철 구민회 권기정 김광웅(금호석유화학) 김광웅(KIST) 김계용 김봉식 김상곤 김성철 김영하 김완영 김우식 김원택 김은영 김재문 김점식 김정엽 김창규 김척기 노익삼 노인기 맹기석 맹원기 문탁진 민병권 박대식 박종률 박천옥 변형직 성용길 성재갑 신영조 신현주 심재후 심정섭 안태완 여종기 원영무 유영학 이관용 이기동 이덕표 이동주 이득산 이만희 이서봉 이 웅 이유건 이학기 이후성 임성택 임승순 장동호 정경택 정기현 정 발 정석규 정정부 정진철 조원제 조의환 지동범 진정일 최규석 최남석 최삼권 최원제 최준식 최철립 한만정 한순교 한정련 허동섭 황익수 홍성일 —이상 77명—
7대	1990. 1. 1- 1991.12.31	강 오 강두환 강수철 구민회 권기정 김광건 김광웅(금호그룹회장부속실) 김광웅(KIST) 김계용 김낙중 김병식 김봉식 김상욱 김성철 김영하 김완영 김우식 김원택 김은영 김재문 김점식 김정엽 김창규 김척기 김천식 김학주 나병철 노광현 노익삼 노인기 맹기석 맹원기 문탁진 민병권 박 훈 박종률 박천옥 변형직 성용길 송해영 신영조 신현주 심재후 심정섭 안광덕 안태완 여종기 원영무 윤진산 이 웅 이관용 이광섭 이기동 이덕표 이동주 이동호 이만희 이상원 이서봉 이승조 이유건 이학기 이해방 이후성 임성택 임승순 임용성 장동호 정경택 정기현 정 발 정석규 정정부 정진철 조원제 조원호 조의환 주동준 지동범 진인주 진정일 최규석 최남석 최삼권 최준식 최철립 최형천 한만정 한순교 한정련 허동섭 홍성일 —이상 92명—

	기 간	평 의 원
8대	1992. 1. 1- 1993.12.31	강두환 강용수 고윤석 김광웅 김광태 김기협 김낙중 김동국 김병식 김병필 김봉식 김상욱 김성철 김연식 김영우 김영하 김완영 김우식 김은영 김재문 김재진 김점식 김정엽 김창규 김창중 김척기 김천식 김태호 김학주 김휘중 노광현 노시태 노익삼 노인기 맹기석 맹원기 문규열 문탁진 민병권 민태익 박 훈 박병규 박인석 박종률 변선호 변재황 상용길 송해영 신영조 신종건 신현주 심정섭 안광덕 안태완 여종기 원영무 유영학 윤진산 이 용 이관용 이기동 이동주 이동호 이병형 이상원 이서봉 이승조 이정대 이종성 이해방 이후성 임성택 임승순 임용성 장동호 장용균 정 발 정경택 정인재 정진철 조성효 조원제 조원호 조의환 주동준 지동범 진인주 진정일 최규석 최근선 최길영 최남석 최삼권 최준식 최철립 한만정 한정련 허동섭 허정림 홍성일 — 이상 100명 —
9대	1994. 1. 1- 1995.12.31	강 관 강두환 강신원 고대종 고윤석 김공수 김광웅 김기협 김낙중 김동국 김경원 김병식 김봉식 김상욱 김성철 김연식 김영하 김완영 김우식 김은영 김재문 김재진 김정곤 김정호 김정엽 김진백 김창규 김척기 김충부 김태호 김학주 김휘중 노시태 노익삼 도춘호 문규열 문탁진 민병권 민태익 박병규 박이순 박인석 박종률 박찬언 박태석 변선호 변재황 성용길 송해영 신영조 신종건 신현주 심홍구 안광덕 안태완 양유성 여종기 이상선 유영학 윤대욱 윤진산 이국노 이동주 이동호 이병형 이부섭 이상원 이서봉 이석현 이승조 이용수 이장우 이정대 이종문 이종성 이해방 이호설 이후성 이회연 임대우 임승순 임원희 장성봉 장용균 장태현 정동진 정 발 정경택 정인재 정종구 정진철 조병욱 조성효 조원제 조원호 조의환 주동준 조종수 진왕철 진인주 진정일 채규호 최규석 최길영 최남석 최철립 한만정 한정련 허동섭 허정림 홍성일 황규익 — 이상 112명 —
10대	1996. 1. 1- 1997.12.31	강 관 강두환 강홍섭 고대종 고윤석 권오승 김경원 김공수 김광웅 김기협 김낙중 김동국 김병식 김봉식 김상욱 김성철 김연식 김영하 김완영 김우식 김은영 김재문 김재진 김정곤 김정엽 김정호 김중현 김진백 김창규 김척기 김충부 김태호 김학주 김휘중 노시태 노익삼 도춘호 문탁진 민병권 민태익 박병규 박상욱 박이순 박인석 박찬언 박태석 변재황 성기용 성용길 송해영 송현훈 신영조 신종건 신현주 심정섭 심홍구 안광덕 안태완 양유성 엄달호 여종기 이상선 유영태 유영학 윤대욱 윤진산 이광섭 이국노 이규호 이동주 이동호 이명천 이병형 이부섭 이상원 이서봉 이석현 이승조 이영무 이용수 이장우 이정대 이종문 이종성 이치규 이해방 이호설 이후성 이회연 임대우 임승순 장성봉 장용균 장태현 정경택 정동진 정 발 정인재 정종구 정진철 조병욱 조성효 조원제 조원호 조의환 조종수 주동준 주혁종 진왕철 진인주 진정일 채규호 최규석 최길영 최남석 최삼권 최진석 최철립 한만정 한정련 허동섭 허정림 홍성일 황규익 — 이상 124명 —

역 대 기 금 관 리 위 원

	기 간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1대	1986. 1. 1-1988.12.31	김은영	김광웅	강두환 김계용 김영하 김정엽 조의환 홍성일
3대	1989. 1. 1-1990.12.31	노익삼	이후성	김은영 맹원기 김광웅 김낙중
4대	1991. 1. 1-1992.12.31	안태완	'91 김성철 '92 최철립	
5대	1993. 1. 1-1994.12.31	홍성일	'93 김영하 '94 임승순	
6대	1995. 1. 1-1996.12.31	김은영	'95 강두환 '96 김동국	

역 대 편 집 위 원

	기 간	위 원 장		위 원
1대	1976. 9. 8- 1978.12.31	조의환		김성철 마석일 정진철 진흥기 진정일
2대	1979. 1. 1- 1980.12.31	김계용		김봉식 김상옥 김영하 마석일 성용길 이덕원 이동주 정진철 조원호 조종수
3대	1981. 1. 1- 1982.12.31	진정일		김우식 노시태 복영일 성용길 이동주 임승순 정평진 조원제 조원호 조종수
4대	1983. 1. 1- 1984.12.31	조의환		김계용 김성철 안광덕 이석현 조원호 한만정 홍성일
5대	1985. 1. 1- 1986.12.31	진정일 홍성일		강두환 김봉식 노시태 안광덕 이석현 이후성 정진철 조원제 조원호 조종수
6대	1987. 1. 1- 1988.12.31	학 술	이후성	안광덕(부위원장) 김완영 김우식 김재진 노광현 박오옥 이장우 임승순
		기 술		장태현 진왕철 탁태문
7대	1989. 1. 1- 1990.12.31	학 술	조원호	강용수 박정기 박태기 이경우 이선규 이정대 정종구 최길영
		기 술		이상원(부위원장) 김병규 노시태 민경은 박오옥 박정기 박찬언 장석규 주혁중 채규호 허정일
8대	1991. 1. 1- 1991.12.31	학 술	성용길	김기수 김중수 김청수 박경운 박호진 백태무 손태원 원호연 이규호 한상규
		기 술	김성철	강용수(부위원장) 공명선 김진환 박이순 서광석 신재섭 이대수 이영무 이희우 하창식
9대	1992. 1. 1- 1992.12.31	학 술	강두환	한양규(부위원장) 김병철 임무산 김대식 김순식 이진호 정규하 유진녕 손정인
		기 술	최철림	이석현(부위원장) 김중현 김진봉 김진학 서용석 유영태 조길원 주혁중 차국현 최형진 하기룡
10대	1993. 1. 1- 1993.12.31	학 술	강두환	손태원(부위원장) 구정기 김원태 김정안 양창선 이기윤 장지영 전병철 조창기
		영 문	조의환	김진백(부위원장) 김진봉 안정호 이석현 이철주 이한섭 이희우 장정식 하영철 하창식 홍성권
		기 술	김영하	진인주(부위원장) 안광덕 장태현 김진환 김성철 이도익 이해방 이후성 이승중 이영철 이영무 민경집 박동원 윤도영
11대	1994. 1. 1- 1994.12.31	학 술	김성철	박태석(부위원장) 강호중 공명선 김철희 양갑승 장지영 조길원 조창기 차국현 한상규
		영 문	조의환	이영무(부위원장) 강인규 김성수 김철희 박기동 서동학 안정호 이기윤 인교진 조재영 정경호
		기 술	임승순	진인주(부위원장) 안광덕 장태현 김진환 김성철 이도익 이해방 이후성 이승중 이영철 이영무 민경집 박동원 윤도영
12대	1995. 1. 1- 1995.12.31	학 술	김성철	차국현(부위원장) 김성훈 김우년 김정호 김지홍 김창근 류주환 이광희 이대수 이종근
		영 문	이후성	이영무(부위원장) 김덕준 김우년 박수영 송기국 이진호 인교진 정경호 조창기 조현남 최세영
		기 술	강두환	이한섭(부위원장) 안광덕 장태현 진인주 김진환 김성철 이도익 이해방 이승중 이영철 이영무 박동원 임무산 윤도영
13대	1996. 1. 1- 1996.12.31	학술	김성철	조재영(부위원장) 김대흠 김성수 김준경 김진학 김철희 박현길 안병현 하기룡 허 탁
		영문	이후성	송기국(부위원장) 김병철 김우년 김준경 김철희 박영옥 이영관 이해원 조동련 조명호 조재영
		기술	김동국	김정호(부위원장) 안광덕 채규호 장태현 진인주 조길원 김병규 김진환 김성철 이대수 이도익 이해방 이한섭 이승중 이영철 이영무 박동원 임무산 윤도영
				박수영(부위원장) 김대흠 김성수 김성훈 김양국 김환규 민병길 안병현 인교진 임순호 허완수

역 대 학 술 위 원

	기 간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1대	1976. 9. 8-1978.12.31	최규석	조의환	김진우 맹기석 박완빈 백남철 이동주
2대	1979. 1. 1-1980.12.31	안태완	김계용	김진우 맹기석 백남철 조의환 최남석
3대	1981. 1. 1-1982.12.31	정기현	진정일	김점식 백남철 조의환 최규석
4대	1983. 1. 1-1984.12.31	변형직	조의환	김상용 김재문 목영일 원영무 이남기 이학기 조원제 한순교
5대	1985. 1. 1-1986.12.31	최삼권	진정일 홍성일	김상용 문탁진 안태완 이동주 한만정 허영우
6대	1987. 1. 1-1988.12.31	조의환		김공수 김정엽 이서봉 조원제 진정일 홍성일
7대	1989. 1. 1-1990.12.31	한만정		김봉식 김성철 김우식 김영하 성용길 이해방 임승순 조원제 조원호 조종수 진정일 최철람

역 대 자 문 위 원

	기 간	위원장	위 원
1대	1987. 1. 1-1990.12.31	심정섭	김원택 김점식 변형직 정기현 최삼권
2대	1989. 1. 1-1992.12.31	심정섭	강수철 김광웅(금호신백) 노익삼 맹기석 박천옥 이기동 지동범 최근선 최규석
3대	1991. 1. 1-1994.12.31	심정섭	김원택 김재문 김점식 변형직 안태완 정기현 최삼권
4대	1993. 1. 1-1996.12.31	심정섭	김광웅(금호에니켄화학) 노익삼 맹기석 박천옥 이기동 조의환 지동범 최근 선 최규석 홍성일
5대	1995. 1. 1-1998.12.31	심정섭	김원택 김재문 김점식 변형직 안태완 최삼권

역 대 교 육 위 원

	기 간	위원장	위 원
1대	1989. 1. 1-1990.12.31	신영조	강두환 김우식 유봉렬 이기창 주혁중 진인주
2대	1991. 1. 1-1991.12.31	조원제	
3대	1992. 1. 1-1992.12.31	김우식	
4대	1993. 1. 1-1993.12.31	김우식	
5대	1994. 1. 1-1994.12.31	정진철	
6대	1995. 1. 1-1995.12.31	정진철	
7대	1996. 1. 1-1996.12.31	강두환	

역 대 재 무 위 원

	기 간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1대	1979. 1. 1-1980.12.31	정기현	김은영	강박광 김순모 김은영 노익삼 안태완 윤재석 이부섭 이택순
2대	1981. 1. 1-1982.12.31	이기동	김계용	강두환 김순모 김은영 김점식 박천옥 윤재석 이학기 신정휴 한순교
3대	1983. 1. 1-1984.12.31	최근선	김정엽	강두환 김은영 김재문 노익삼 박천옥 성용길 이만희 최준식 한순교
4대	1985. 1. 1-1986.12.31	지동범	김계용	구민희 김광웅 김영하 김은영 김창규 남상은 노인기 박종률 성재갑 유영학 임성택 진동식 최운재 최준식
5대	1987. 1. 1-1988.12.31	김광웅 (금호석 유화학)	김광웅 (KIST)	김은영 지동범 구민희 성재갑 유영학 임성택 진동식 최운재 김순직 이선우 배전운 강경택 김성철 김영하 오태진
6대	1989. 1. 1-1990.12.31	임용성	이후성	김낙중 김성철 진동식 최운재 임성택 유영학 성재갑
7대	1991. 1. 1-1991.12.31	이부섭	김성철	김연식 김순모 변재황 장용균 조용장 이두성
8대	1992. 1. 1-1992.12.31	최준식		
9대	1993. 1. 1-1993.12.31	유영학		
10대	1994. 1. 1-1994.12.31	윤대옥		
11대	1995. 1. 1-1995.12.31	김연식		
12대	1996. 1. 1-1996.12.31	성기웅		

역 대 산 학 협 동 위 원

	기 간	위원장	위 원
1대	1979. 1. 1-1980.12.31	김성철	김동선 김영하 이덕규 장용균 정경택 최차용 허동섭
2대	1981. 1. 1-1982.12.31	김광웅	김영덕 권정국 박홍수 신경태 양유성 정일남 최준식 최차용 허동섭
3대	1983. 1. 1-1984.12.31	임승순	김광웅 김규현 김영우 김창규 박홍수 신종건 정두환 정정부 허동섭
4대	1985. 1. 1-1986.12.31	최철림	권기정 송태남 신종건 신현주 여종기 이관용 이상옥 이서봉 이치규 정정부
5대	1987. 1. 1-1988.12.31	정진철	김경원 김오곤 노인기 신현주 여종기 유영학 윤진산 임 신 주동준 최철림
6대	1989. 1. 1-1990.12.31	이서봉	김광태 김기협 김광웅 김학주 노광현 박 훈 박병규 박태기 변재황 여종기 이동호 이승조
7대	1991. 1. 1-1991.12.31	이해방	김오곤 김학주 박정기 박홍배 전종순 주혁중 최길영
8대	1992. 1. 1-1992.12.31	임승순	김광태 김낙중 김휘중 문규열 변재황 이병형 이승조 정동진 최길영
9대	1993. 1. 1-1993.12.31	김동국	
10대	1994. 1. 1-1994.12.31	최철림	고정식 김종수 김충부 양유성 우상선 이정대 이치규 이호설 정종구 조용수
11대	1995. 1. 1-1995.12.31	최철림	
12대	1996. 1. 1-1996.12.31	최철림	

역대용어제정위원

	기 간	위원장	위 원
1대	1979. 1. 1-1980.12.31	최규석	강두환 김태호 원영무 조의환 진정일 홍성일
2대	1981. 1. 1-1982.12.31	최규석	강두환 김광웅 김계용 김성철 김은영 김태호 원영무 조의환 진정일 최삼권 홍성일
3대	1983. 1. 1-1984.12.31	최규석	김계용 김광웅 김성철 김영하 김은영 김점식 김정엽 성용길 안광덕 이규현 이동주 임승순 조의환 진정일 탁태문 최삼권 최철립 홍성일
4대	1985. 1. 1-1986.12.31	최규석	김계용 김광웅 김성철 김영하 김은영 김정엽 성용길 안광덕 이동주 임승순 조의환 진정일 최삼권 최철립 홍성일
5대	1987. 1. 1-1988.12.31	김계용	김광웅 김병식 김성철 김상욱 성용길 안광덕 오태진 원영무 윤진산 이후성 임승순 주동준 최철립 탁태문 허동섭 홍성일
6대	1989. 1. 1-1990.12.31	정진철	김공수 김낙중 박병규 박이순 박일현 성용길 안광덕 이광섭 이상원 이장우 이태훈 장태현 정종구 진왕철 최길영
7대	1991. 1. 1-1991.12.31	김영하	김재진 김태호 노시태 도춘호 박이순 손태원 신동근 윤진산 이석현 허 탁
8대	1992. 1. 1-1992.12.31	이동호	김재진 김태호 김홍두 도춘호 박이순 신동근 윤진산 정한모 조재영 허 탁
9대	1993. 1. 1-1993.12.31	이동호	김재진 김태호 김홍두 도춘호 박이순 신동근 윤진산 정한모 조재영 허 탁
10대	1994. 1. 1-1994.12.31	이동호	김재진 김태호 김홍두 도춘호 박이순 신동근 윤진산 정한모 조재영 허 탁
11대	1995. 1. 1-1995.12.31	이동호	김재진 김태호 김홍두 도춘호 박이순 신동근 윤진산 정한모 조재영 허 탁
12대	1996. 1. 1-1996.12.31	임승순	

교과서편찬위원

기 간	위원장	위 원
1984. 1. 1-	조의환	김완영 김우식 김재문 노익삼 맹기석 신영조 안태완 최규석 한만정 한정련 홍성일 진인주

상암고분자상운영위원

기 간	위 원
1996. 1. 1-1997. 12. 31	김은영 김정엽 이서봉 조의환 진정일 한만정 홍성일

창립2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 : 이서봉 성용길 김동국 임승순 이후성 이광섭 최길영

창립20주년 기념특집호 편집위원 : 위원장 - 이후성

위 원 - 강두환 김동국 김성철 김영하 임승순 진인주 최철립

학 회 연 혁

날 짜	장 소	내 용
1976. 5. 12	한국과학원	학회창립준비를 고분자연구발표회에서 결의
10. 7	국립공업시험원	한국고분자학회 발기인 대회
10. 8	한국과학원	한국고분자학회 창립총회
10. 8		초대 회장 성좌경박사(인하대학교) 선출
1977. 1. 10		한양대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내에 학회사무실을 둠
3.		학회지명을 “폴리머”로 결정
4. 22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고분자학회지(폴리머) 창간호 발간
5. 6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 발기인 총회
8. 13		'77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8. 18		과학기술처, 문공부에 학회등록 신청
10. 15		학회등록에 관한 과학기술처 승인을 받음
10. 21-22	인하대학교	과학기술처장관명의 허가장 47호
1978. 4. 20	국립공업시험원	학회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쌍림동 146-2
10. 20	경북대학교	한국프라스틱회관 506호로 옮김
		경북지부 발족
		초대 지부장 이학기교수(경북대) 선출
		'77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78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78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1979. 1. 13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제2대 회장 심정섭박사(서울대) 선출
1. 26		일본고분자학회와 한·일공동심포지엄에 관한 회의 개최
3. 17	부산대학교	학회 마크 제정
4. 11-12	아주공과대학	부산·경남지부 발족
4. 13-14	아주공과대학	초대 지부장 박천육교수(부산대) 선출
8. 28-31	속리산관광호텔	합성수지의 간단한 정성적 식별법에 관한 세미나
10. 23-24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제1회 기기분석세미나, 이덕원 박사)
10. 25	한국과학기술연구소	'79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1980. 4. 25-26	단국대학교	제1회 고분자하계대학 개최(연사 12명)
5. 9-10	단국대학교	제1회 한·일공동심포지엄
5. 23-24	단국대학교	'79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8. 21-23	한국화학연구소	'80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10. 17-24	경도대학(일본)	플라트식 식별법 강화
11. 7-8	부산대학교	제1회 고분자분석세미나
11. 14-15	단국대학교	제2회 고분자하계대학세미나(연사 10명)
11		제2회 한·일공동심포지엄
1981. 4. 24-25	한양대학교	'80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7. 15-16	단국대학교	제3대 회장 김원택박사(한양대) 선출
8. 20-22	부산대학교	제2회 고분자정성분석세미나
10. 6-8	한국페인트잉크회관	제2대 부산·경남지부장 박천육교수(부산대) 선출
10. 21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81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제3회 고분자정성분석 및 기기분석세미나
		제3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12명)
		제1회 도료와도장기술세미나(연사 9명)
		플라스틱가공기술 및 품질관리세미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공동

날 짜	장 소	내 용
10. 23-24 11. 20	강원대학 충남대학교	'81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충남지부 발족 초대 지부장 맹기석교수(충남대) 선출
12. 10		제2대 경북지부장 이만희교수(영남대) 선출
1982. 4. 23-24	한양대학교	'82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7. 22-24	속리산관광호텔	제1회 고분자토론회
8. 19-21	정읍 내장산	제4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10명)
9. 20-21	한국과학기술원	제4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
10. 15-16	충북대학교	'82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11. 17-19	한국페인트잉크회관	제4대 회장 정기현박사(인하대) 선출
11.		제2회 도료와도장기술세미나(연사 9명)
1983. 4. 16-17	단국대학교	제3대 부산·경남지부장 박천옥교수(부산대) 선출
5. 16-17	한국과학기술원	'83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6. 18		고분자가공 특별세미나 호남지부 발족 초대 지부장 김재문교수(전남대) 선출
7. 28-30	경주조선호텔	제2회 고분자토론회
8. 17-20	설악파크호텔	제5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9명)
9. 29-30	한국과학기술원	제5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4명)
11. 16-18	한국페인트잉크회관	제3회 도료와도장기술세미나(연사 9명)
12.		제2대 충남지부장 맹기석교수(충남대) 선출
12.		제3대 경북지부장 김종택교수(경북대) 선출
1984. 4. 20-21	인하대학교	'84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5. 24-26	도로 파라다이스 호텔	제3회 고분자토론회
6. 21-22	한국과학기술원	제6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9명)
7. 11-14	경주코오롱호텔	제6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10명)
10. 19-20	전남대학교	'84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11.2	부산대학교	제5대 회장 김점식박사(한양대) 선출 제1회 부산—구주(일본)고분자공동심포지엄 (부산·경남지부 주최)
11. 21-23	한국페인트잉크회관	제4회 도료와도장기술세미나(연사 9명)
11.		제4대 부산·경남지부장 박천옥교수(부산대) 선출
1985. 4. 26-27	건국대학교	'85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5. 22-24	한국과학기술원	제7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10명)
6. 28-29	유성관광호텔	제4회 고분자토론회(연사 3명)
8. 21-24	부산한국콘도미니움	제7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9명)
10. 25-26	전북대학교	'85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11.27-29	한국페인트잉크회관	제5회 도료와도장기술세미나(연사 10명)
11.		제2대 호남지부장 김완영교수(전북대) 선출
12.		제4대 경북지부장 장동호교수(영남대) 선출
1986. 2. 15		제3대 충남지부장 민병권박사(한국화학연구소)
5. 2-3	경북대학교	'86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5. 21-23	한국과학기술원	제8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11명)
6. 13-14	유성관광호텔	제5회 고분자토론회
8. 11-14	인천송도호텔	제8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13명)
10. 16-18	엠배서더호텔	한국고분자학회 창립10주년 기념 및
	한국과학기술원	'86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날 짜	장 소	내 용
10. 31		제6대 회장 노익삼박사(인하대) 선출 학회 사무실 매입하여 이전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601호 고분자용어집 발간
10.		
11. 19-21	한국페인트잉크회관	제6회 도료와도장기술세미나(연사 9명)
11.		제5대 부산·경남지부장 박천욱교수(부산대) 선출
1987. 4. 9	한국과학기술원	특별세미나(A. Yamada)
4. 30-5. 1	한국과학기술원, 동국대학교	특별세미나(M. Takayanagi, T. Otsu)
5. 1-2	동국대학교	'87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5. 12	한국과학기술원	특별세미나(Rudolph Pariser)
5. 27-29	한국과학기술원	제9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10명)
6. 7	동국대학교	특별세미나(전명식 박사)
6. 10	동국대학교	특별세미나(윤도영 박사)
6. 12		제6대 부산·경남지부장 신영조교수(부산대) 선출
6. 18-19	제주 KAL호텔	'87고분자토론회(연사 3명)
8. 10-13	용평리조트	제9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11명)
9. 4-5	한국과학기술원	고성능고분자의 최근동향
9. 8	한국과학기술원	특별세미나(노영준 박사)
9. 16	한국과학기술원	특별세미나(Charles C. Han)
9. 26		제3대 호남지부장 조성휴교수(조선대) 선출
10. 16-17	부산대학교	'87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11. 11-13	한국페인트잉크회관	제7회 도료와도장기술세미나(연사 9명)
12.		경북지부 지부명 개칭-대구·경북지부
		제5대 대구·경북지부장 김우식교수(경북대) 선출
1988. 1. 18		제4대 충남지부장 맹원기박사(한국화약그룹) 선출
3. 23-25	한국과학기술원	제10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9명)
4. 15-16	인하대학교	'88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6. 23-25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	'88고분자토론회(연사 5명)
7. 18-19	한국과학기술원	고분자블렌드 및 복합체의 기초(연사 6명)
8. 8-11	속리산관광호텔	제10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8명)
10. 4	한국과학기술원	특별세미나(Takeo Saegusa)
10.14-15	충남대학교	'88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제7대 회장 안태완박사(서울대) 선출
10. 27	한국과학기술원	특별세미나(O. W. Webster)
11.16-18	한국페인트잉크회관	제8회 도료와도장기술세미나(연사 9명)
1989. 3. 8-10	한국과학기술원	제11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9명)
4. 28-29	고려대학교	'89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5. 15		제7대 부산·경남지부장 민병권소장(한국신발연구소) 선출
6. 26-28	롯데호텔(서울)	IUPAC 국제고분자심포지움
7. 13		충남지부 지부명개칭 - 충청지부
8. 16-19	백암동해관광호텔	제11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8명)
8. 29-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블렌드와 복합제(연사 6명)
10. 13-14	포항공과대학교	'89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11. 20-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관한 세미나(연사 8명)
12. 8		제5대 충청지부장 송해영교수(충남대) 선출
12. 16		제4대 호남지부장 김재문교수(전남대) 선출

날 짜	장 소	내 용
12.		제6대 대구·경북지부장 김봉식교수(영남대) 선출
1990. 1. 31		기술지「고분자과학과기술」창간호 발간
3. 21-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12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9명)
4. 27-28	고려대학교	'90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5. 24-25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	'90고분자토론회(연사 3명)
6. 21-22	서울대 호암생활관	범용 플라스틱의 고기능화(연사 8명)
8. 8-11	목포신안비치호텔	제12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8명)
8. 22	한국화학연구소	레이저광산란 워크샵:이론 및 실험(연사 5명)
10. 19-20	전남대학교	'90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제8대 회장 조의환박사(KAIST) 선출
11. 15-16	서울대 호암생활관	정보기능용고분자(연사 7명)
12. 21		제8대 부산·경남지부장 조원제교수(부산대) 선출
1991. 2.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별세미나(V. Kabanov, V. Shibaev)
2. 26-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13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9명)
3. 11-12	쉐라톤위커펜호텔	신기술을 위한 고분자국제심포지움(연사 19명)
4. 12-13	한양대학교	'91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5. 2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수석부회장 및 총무이사직을 신설하여 차기 회장 및 전무이사직을 승계하는 제도를 승인 받음(과거처)
5.9-10	대전유성관광호텔	'91고분자토론회(연사 3명)
5. 16		학회 사무실 확장
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602호 매입
		분자전자부문위원회 제1차 결성준비모임 및 정관작성 (참석인:김정엽, 이서봉, 이후성, 박영우, 임승순, 진정일)
7. 22-25	무주리조트	제13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9명)
9. 10		분자전자부문위원회 설립승인(이사회)
		발기인 준비위원장 KIST 김정엽 박사
10. 11-12	영남대학교	'91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제9대 회장 홍성일 박사 선출
11. 21-22	한국과학기술원	첨단 복합체 매트릭스 수지 및 섬유(연사 6명)
11. 23		제5대 호남지부장 김천식소장(금호) 선출
12. 9		제6대 충청지부장 이해방박사(KRICT) 선출
12.		제7대 대구·경북지부장 정진철교수(포항공대) 선출
1992. 2. 20		분자전자부문위원회 창립
		초대 위원장 김정엽(KIST)
3. 11-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14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9명)
4. 10-11	건국대학교	'92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5. 14-15	도고 파라다이스호텔	'92고분자토론회(연사 3명)
8. 17-20	용평리조트	제14회 고분자하계대학(연사 9명)
10. 9-10	전북대학교	'92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제10대 회장 김은영박사(KIST) 선출
11. 24	서울대 호암생활관	열경화성수지 및 고분자복합재료(연사 6명)
12.		제9대 부산·경남지부장 김정곤교수(부산공업대) 선출
1993. 2. 16-20	한양대학교	제1회 고분자아카데미(연사 21명)
3. 15-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15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9명)
4. 2		영문지「Korea Polymer J.」창간호 발간
4. 9-10	연세대학교	'93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7. 22-24	용평리조트	제1회 고분자산·학·연 심포지움(연사 7명)

날 짜	장 소	내 용
8.		「고분자실험」 교재 발간
9. 15-17	중국 북경 우정호텔	제1차 한·중 고분자 공동 심포지움(발표자 한국 21편, 중국 35편)
10. 8-9	단국대 천안캠퍼스	'93년도 추계정기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10. 9	단국대 천안캠퍼스	제11대 회장 한만정박사(아주대) 선출
11. 26		의료용 고분자 부문위원회 창립 발기총회
12. 2		분자전자부문위원회 제2대 위원장 진정일교수(고려대) 선출
12.		제7대 충청지부장 김성철교수(KAIST) 선출
12.		제6대 호남지부장 조순채교수(전북대) 선출
12.		제8대 대구·경북지부장 이승조소장(코오롱) 선출
1994. 2. 15-19	한양대학교	제2회 고분자아카데미(연사 19명)
3. 16-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16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9명)
4. 15-16	동국대학교	'94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6. 2-3	파라다이스호텔 도고	'94고분자토론회(연사 3명)
6. 23-24	생산기술연구원	'94플라스틱실용화기술포럼(연사 16명)
7. 21-23	용평타워콘도	제2회 고분자산·학·연 심포지움(연사 7명)
10. 14-15	경상대학교	'94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12.		제12대 회장 김정엽박사(KIST) 선출
1995. 2. 14-18	국립공업기술원	제10대 부산·경남지부장 박상욱소장(한국신발연구소) 선출
3. 22-24	한국화학연구소	제3회 고분자아카데미(연사 19명)
4. 14-15	선균관대 수원캠퍼스	제17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9명)
5. 11-12	서울대 호암생활관	'95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5. 23-24	파라다이스호텔 도고	제2차 한·중 고분자 공동 심포지움(발표자 한국 31편, 중국 25편)
6. 22-23	국립공업기술원	'95고분자토론회(연사 3명)
7. 20-22	용평리조트	'95플라스틱실용화기술포럼(연사 16명)
8. 22-23	서귀포 하이아트호텔	제3회 고분자산·학·연 심포지움(연사 8명)
10. 6-7	계명대학교	성좌경토론회(연사 7명)
10.		'95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11. 10		제13대 회장 이서봉박사(KRICT) 선출
12.		「고분자용어집」 증보판 발간
12.		제8대 충청지부장 민태익소장(한화그룹) 선출
12.		제7대 호남지부장 조성효교수(전남대) 선출
1996. 2. 6-10	국립공업기술원	제9대 대구·경북지부장 이동호교수(경북대) 선출
2. 23		제4회 고분자아카데미(연사 19명)
3. 20-22	한국화학연구소	분자전자부문위원회 제3대위원장 이후성교수(서강대) 선출
4. 19-20	동국대학교	제18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연사 10명)
6. 13-14	대전 홍인호텔	'96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6. 27-28	국립기술품질원	'96토론회(연사 2명)
8. 4-9	인터컨티넨탈호텔	'96플라스틱실용화기술포럼(연사 14명)
		IUPAC MACRO SEOUL '96

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

회 수	개최년월일	개최장소	특 강	연구논문	참가인원(여명)
1	1977. 5. 6~7	한국과학기술연구소	5	14	230
2	1977. 10. 21~22	인 하 대 학 교	4	18	200
3	1978. 4. 20	국 립 공 업 시 험 원	2	9	150
4	1978. 10. 20~21	경 북 대 학 교	5	13	150
5	1979. 4. 13~14	아 주 공 과 대 학	4	17	200
6	1979. 10. 25~26	한국과학기술연구소	2	9	200
7	1980. 4. 25~26	단 국 대 학 교	2	22	140
8	1980. 11. 7~8	부 산 대 학 교	5	24	200
9	1981. 4. 24~25	한 양 대 학 교	4	23	200
10	1981. 10. 23~24	강 원 대 학 교	6	32	200
11	1982. 4. 23~24	한 양 대 학 교	5	24	200
12	1982. 10. 15~16	충 북 대 학 교	6	39	160
13	1983. 4. 16~17	단 국 대 학 교	6	23	200
14	1983. 10. 14~15	화 학 연 구 소	9	36	160
15	1984. 4. 20~21	인 하 대 학 교	5	36	300
16	1984. 10. 19~20	전 남 대 학 교	3	59	250
17	1985. 4. 26~27	건 국 대 학 교	7	53	300
18	1985. 10. 25~26	전 북 대 학 교	9	56	250
19	1986. 5. 2~3	경 북 대 학 교	12	70	400
20	1986. 10. 17~18	한 국 과 학 기 술 원	26	100	350
21	1987. 5. 1~2	동 국 대 학 교	12	80	300
22	1987. 10. 16~17	부 산 대 학 교	12	101	314
23	1988. 4. 15~16	인 하 대 학 교	12	100	330
24	1988. 10. 14~15	충 남 대 학 교	19	113	382
25	1989. 4. 28~29	아 주 대 학 교	12	86	370
26	1989. 10. 13~14	포 항 공 과 대 학 교	13	145	400
27	1990. 4. 27~28	고 려 대 학 교	12	100	400
28	1990. 10. 19~20	전 남 대 학 교	20	144	442
29	1991. 4. 12~13	한 양 대 학 교	15	115	400
30	1991. 10. 11~12	영 남 대 학 교	32	188	550
31	1992. 4. 10~11	건 국 대 학 교	23	141	550
32	1992. 10. 9~10	전 북 대 학 교	26	200	530
33	1993. 4. 9~10	연 세 대 학 교	22	157	500
34	1993. 10. 8~9	단국대학교(천안)	20	200	600
35	1994. 4. 15~16	동 국 대 학 교	23	176	534
36	1994. 10. 14~15	경 상 대 학 교	17	259	514
37	1995. 4. 14~15	성균관대학교(수원)	20	227	650
38	1995. 10. 6~7	계 명 대 학 교	18	314	632
39	1996. 4. 19~20	동 국 대 학 교	21	251	700
40	1996. 10. 11~12	한 남 대 학 교	38	391	

* 특강은 초청특강, 산·학·연, 학회상수상강연을 포함한 숫자임.

고분자 기기분석 세미나

	개 최 일 시	장 소	연 사	참 가 자 수
제 1 회	1979. 4. 11-12	아주공대		32
제 2 회	1980 11. 14-15	단국대학교		28
제 3 회	1981 7. 15-16	단국대학교		33
제 4 회	1982 9. 20-21	한국과학기술원		28
제 5 회	1983 9. 29-30	한국과학기술원	4명	32
제 6 회	1984 6. 21-22	한국과학기술원	9명	42
제 7 회	1985 5. 22-24	한국과학기술원	10명	50
제 8 회	1986 5. 21-23	한국과학기술원	11명	40
제 9 회	1987 5. 27-29	한국과학기술원	10명	43
제10회	1988 3. 23-25	한국과학기술원	9명	46
제11회	1989 3. 8-10	한국과학기술원	9명	37
제12회	1990 3. 21-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명	53
제13회	1991 2. 26-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명	55
제14회	1992 3. 11-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명	61
제15회	1993 3. 15-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명	43
제16회	1994 3. 16-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명	49
제17회	1995 3. 22-24	한국화학연구소	9명	56
제18회	1996 3. 20-22	한국화학연구소	10명	86

고분자 하계대학

	개 최 일 시	장 소	연 사	참 가 자 수
제 1 회	1979 8. 28-31	속리산관광호텔	12명	27
제 2 회	1980 8. 21-23	한국화학연구소	10명	25
제 3 회	1981 8. 20-22	부산대학교	12명	22
제 4 회	1982 8. 19-21	정읍 내장산	10명	40
제 5 회	1983 8. 17-20	설악파크호텔	9명	34
제 6 회	1984 7. 11-14	경주코오롱호텔	10명	39
제 7 회	1985 8. 21-24	부산한국콘도미니움	9명	34
제 8 회	1986 8. 11-14	인천송도호텔	13명	45
제 9 회	1987 8. 10-13	용평리조트	11명	44
제10회	1988 8. 8-11	속리산관광호텔	8명	37
제11회	1989 8. 16-19	백암동해관광호텔	8명	57
제12회	1990 8. 8-11	목포신안비치호텔	8명	36
제13회	1991 7. 22-25	무주리조트	9명	41
제14회	1992 8. 17-20	용평리조트	9명	47

도료와 도장기술 세미나

	개 최 일 시	장 소	연 사	참가자수
제 1 회	1981 10. 6- 8	한국페인트잉크회관	9명	36
제 2 회	1982 11. 17-19	한국페인트잉크회관	9명	52
제 3 회	1983 11. 16-18	한국페인트잉크회관	9명	45
제 4 회	1984 11. 21-23	한국페인트잉크회관	9명	52
제 5 회	1985 11. 27-29	한국페인트잉크회관	10명	39
제 6 회	1986 11. 19-21	한국페인트잉크회관	9명	30
제 7 회	1987 11. 11-13	한국페인트잉크회관	9명	36
제 8 회	1988 11. 16-18	한국페인트잉크회관	9명	28

고분자 토론회

	개 최 일 시	장 소	연 사	참가자수
제 1 회	1982 7. 22-24	속리산관광호텔	3명	31
제 2 회	1983 7. 28-30	경주조선호텔	6명	25
제 3 회	1984 5. 24-26	도고 파라다이스호텔	7명	27
제 4 회	1985 6. 28-29	유성관광호텔	5명	37
제 5 회	1986 6. 13-14	유성관광호텔	6명	45
제 6 회	1987 6. 18-19	제주 KAL호텔	3명	29
제 7 회	1988 6. 23-25	도고 파라다이스호텔	5명	22
제 8 회	1990 5. 24-25	도고 파라다이스호텔	3명	24
제 9 회	1991 5. 9-10	대전 유성관광호텔	3명	26
제 10 회	1992 5. 14-15	도고 파라다이스호텔	3명	30
제 11 회	1994 6. 2- 3	파라다이스호텔 도고	3명	49
제 12 회	1995 5. 23-24	파라다이스호텔 도고	3명	31
제 13 회	1996 6. 13-14	대전 홍인호텔	2명	24
성좌경토론회	1995 8. 22-23	서귀포 하이아트호텔	7명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

	개 최 일 시	장 소	연 사	참가자수
제 1 회	1993 7. 22-24	용평리조트	7명	43
제 2 회	1994 7. 21-23	용평타워콘도	7명	35
제 3 회	1995 7. 20-22	용평리조트	8명	30

고분자 아카데미

	개 최 일 시	장 소	연 사	참가자수
제 1 회	1993. 2. 16-20	한양대학교	21명	82
제 2 회	1994. 2. 15-19	한양대학교	19명	75
제 3 회	1995. 2. 14-18	국립공업기술원	19명	73
제 4 회	1996. 2. 6-10	국립공업기술원	19명	96

플라스틱실용화기술포럼

개 최 일 시	장 소	연 사	참가자수
1994 6. 23-24	생산기술연구원	16명	88
1995 6. 22-23	국립공업기술원	16명	68
1996 6. 27-28	국립기술품질원	14명	109

기타 세미나

개 최 일 시	장 소	제 목
1980 5. 9-10	단국대학교	플라트식 식별법 강화
1980 5. 23-24	단국대학교	고분자분석세미나
1981 10. 21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플라스틱가공기술 및 품질관리세미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공동
1983 5. 16-17	한국과학기술원	고분자가공 특별세미나
1988 7. 18-19	한국과학기술원	고분자블렌드 및 복합체의 기초(연사 6명)
1989 8. 29-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블렌드와 복합체(연사 6명)
1989 11. 20-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관한 세미나(연사 8명)
1990 6. 21-22	서울대 호암생활관	범용 플라스틱의 고기능화(연사 8명)
1990 8. 22	한국화학연구소	레이저광산란 워크샵: 이론 및 실체(연사 5명)
1990 11. 15-16	서울대 호암생활관	정보기능용고분자(연사 7명)
1991 11. 21-2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첨단 복합체 매트릭스 수지 및 섬유(연사 6명)
1992 11. 24	서울대 호암생활관	열경화성수지 및 고분자복합재료(연사 6명)

한·중 고분자 공동심포지움

	개 최 일 시	장 소	연 사
제 1 회	1993. 9. 15-17	중국 북경 우정 호텔	발표자 한국 21편, 중국 35편
제 2 회	1995. 5. 11-12	서울대 호암생활관	발표자 한국 31편, 중국 25편

국제심포지움

개 최 일 시	장 소	
1989. 6. 26-28	롯데 호텔(서울)	IUPAC 국제 고분자 심포지움(1989)*
1991. 3. 11-12	쉐라토워커힐호텔	신기술을 위한 고분자 국제심포지움(연사 19명) 63명
1996. 8. 4- 9	인터컨티넨탈호텔	IUPAC MACRO SEOUL '96

*IUPAC 국제 고분자 심포지움(1989)

- 참가국가 26개국
- 참가인원 732명
- 논문발표수 247편(초청강연 31편, 일반강연 169편, 포스터발표 47편)

참가국명	참가인원수	논문발표수	참가국명	참가인원수	논문발표수
AUSTRALIA	2	2	ISRAEL	2	
AUSTRIA	1	1	ITALY	1	
BAHRAIN	2	2	JAPAN	126	85
BELGIUM	1	1	KOREA	503	91
CHINA	5	6	MEXICO	1	1
CZECHOSLOVA	1	1	SAUDI ARABIA	2	
F.R.G	9	4	SINGAPORE	2	1
FINLAND	1		SWEDEN	1	1
FRANCE		2	TAIWAN, CHIN	11	12
GREECE	1	1	TURKEY		2
HONG KONG	2		U.S.A.	38	28

(科學技術處 許可 1977. 8. 13)

(改正定款許可 1991. 5. 2)

(" 1995. 6. 22)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高分子에 관한 化學, 物理學, 生物學, 工學등에 관한 學問 및 技術의 發展 및 普及에 寄與하고 高分子科學 및 高分子工業의 振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韓國高分子學會(이하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 3 條 (事務所의 所在地)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 4 條 (事業) 本會는 第 1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會誌 및 기타 圖書의 刊行
2. 研究發表會, 講演會, 講習會 및 展示會 등의 開催
3. 調査研究, 資料蒐集
4. 研究의 獎勵와 優秀한 業績의 表彰
5. 公益事業의 協贊, 建議 및 高分子工業에 관한 諮問
6. 其他 이 法人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5 條 (法人 供與利益의 受惠者) 本會의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不得已한 경우에는 事前에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그 代價의 一部를 受惠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第 6 條 (委員會와 支部 및 分會) 本會는 第 4 條의 運營을 效率의으로 하기 위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會와 支部 및 分會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第 7 條 (會員資格)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며 本會 所定の 入會願書를 提出하고 正會員의 推薦을 받아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8 條 (會員의 種類) 本會는 다음과 같은 會員을 둔다.

1. 正會員
高分子 및 이에 關聯된 科學, 技術 및 工業에 關한 學問을 배웠거나 이에 從事하는 者. 다만 正會員中 終身 會費를 納付한 者는 終身會員으로 한다.
2. 學生會員
大學에서 正會員에 準한 學問을 배우고 있는 者
3. 團體會員
本會의 目的에 贊成하여 이에 協助하는 學校, 研究所, 圖書館 및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學術團體 또는 機關
4. 特別會員
本會의 目的에 贊成하여 그 事業遂行을 支援하는 個人, 團體 또는 事業體로 한다.
5. 名譽會員
本會의 目的에 關하여 貢獻이 현저하거나 本會發展에 貢獻이 있는 者

第 9 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本會의 會員은 理事會가 定하는 會費를 當該年 3月 31日까지 納入하고 이 定款에 의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第 10 條 (會員의 脫退) 本會의 會員은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 11 條 (會員除名) 本會의 會員中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除名할 수 있다.

1. 本會의 目的에 違背되는 行爲를 한 경우
2. 本會의 名譽를 損傷한 경우
3. 本會에 대한 義務를 怠慢히 한 경우

第 3 章 任 員

第 12 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 長	1人
首席副會長	1人
副 會 長	3人
專 務 理 事	1人
總 務 理 事	1人
理 事	10人 以上 20人 以內(會長, 副會長, 專務理事, 總務理事를 包含한다)
監 查	2人

第 13 條 (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會長職과 首席副會長職은 각각 連任할 수 없다.

② 任員의 任期中 缺員이 생긴 때에는 補選할 수 있고 補選에 의하여 就任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4 條 (任員의 選任方法) ① 會長職은 前任期의 首席副會長이, 專務理事職은 前任期의 總務理事가 承繼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 就任한다.

② 會長, 專務理事를 제외한 任員은 評議員會의 提請으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認准과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 就任한다.

③ 任期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認准과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15 條 (會長 및 理事의 職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本會의 義務를 總括하며 理事會 및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本會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議決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 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第 16 條 (會長 職務代行者의 指名) 會長의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17 條 (監查의 職務) 監查는 다음의 職務를 行한다.

1.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查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查하는 일
3. 第 1 號 및 第 2 號의 監查結果 不正 또는 不法한 點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이를 理事會, 總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그래도 是正치 않을 때에는 監督廳에 報告하는 일
4. 第 3 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總會 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本會의 財産狀況 또는 總會, 理事會의 運營과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會長 또는 總會, 理事會에서 意見を 陳述하는 일
6. 總會 및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銘捺印하는 일

第 4 章 總 會

第 18 條 (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 變更에 관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의 承認
3. 任員 認准에 관한 事項
4. 事業計劃의 承認
5. 其他 重要 事項

第19條(總會의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되 定期總會는 年2回 4月과 10月中에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하고 會長은 그 議長이 된다.

② 會長은 會議案件을 明記하여 7日前에 各 會員들에게 書面으로 通知하거나, 本會誌 또는 新聞에 公告하여 이를 召集한다.

③ 總會는 第2項의 通知事項에 한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第20條(總會의 議決 定足數) ① 總會는 正會員의 15分の 1以上の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總會의 議事は 出席 正會員의 過半數로서 議決하고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21條(總會召集의 特例) ① 會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가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17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が 召集을 要求한 때

3. 正會員 3分の 1 以上이 會議의 目的을 제시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② 總會召集權者가 關立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서 總會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 또는 正會員 3分の 1 以上の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總會는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議長을 指名한다.

第22條(總會議決 除斥事由) 議長 또는 會員이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

2. 金錢 및 資産의 授受를 수반하는 事項으로서 會員自身과 本會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

第5章 平 議 員 會

第23條(平議員會의 設置) 이 法人의 運營에 對한 會員의 議事を 適切히 反映하기 爲하여 平議員會를 둔다. 平議員의 定數는 在籍 正會員의 10分の 1未滿으로 한다.

第24條(平議員會의 構成) 平議員會는 平議員으로 構成한다.

第25條(平議員會의 機能) 平議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1. 會長, 專務理事를 除外한 任員의 除請

2.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3. 其他 重要한 事項

第26條(平議員의 選出) 平議員은 理事會에서 選出하여 總會에서 認准한다.

第27條(平議員의 任期)

1. 平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2. 平議員 任期中 缺員이 생긴 때에는 補選하지 않는다.

第28條(平議員會의 召集) 平議員會는 會長 또는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하여 會長은 그 議長이 된다.

第29條(平議員會의 議決) 平議員會는 定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催되며 出席은 委任狀으로 代身할 수 있고, 議事は 在席 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議決한다.

第6章 理 事 會

第30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業務執行에 關한 事項

2. 事業計劃, 運營에 關한 事項

3. 豫算, 決算書作成에 關한 事項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5. 이 定款에서 定한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6. 其他 重要事項

第31條(議決定足數) ① 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가 出席하지 아니하면 開會하지 못한다.

② 理事會의 議事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 理事會의 議事는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④ 監査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 32 條 (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必要時 會長이 召集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目的을 明示하여 各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理事會는 第 2 項의 通知事項에 한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在籍理事 全員이 出席하고 出席理事 全員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通知하지 아니한 事項이라고 이를 附議하고 議決할 수 있다.

第 33 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① 會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 17 條 第 4 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② 理事會 召集權者가 關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召集할 수 있다.

③ 第 2 項에 의한 理事會는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議長을 指名한다.

第 34 條 (書面決議의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決議에 依할 수 없다.

第 7 章 財 產 및 會 計

第 35 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會員의 會費

2. 財産에서 생기는 과실

3. 寄附金品

4. 其他 收入

第 36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 37 條 (豫算 및 決算) ① 會長은 豫算案을 作成하여 每會計年度 開始 1月前까지 事業計劃書와 함께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 監督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 會長은 每會計年度 終了後 2月以內에 年間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監査의 審査를 거쳐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 監督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38 條 (豫算外의 債務負擔 등) 豫算外의 債務의 負擔이나 債權의 拋棄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8 章 補 則

第 39 條 (解散) 本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40 條 (解散法人의 財産歸屬) 本會가 解散할 때의 殘餘財産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贈한다.

第 41 條 (定款改定) 本會의 定款을 改定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分の 2以上の 贊成과 總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42 條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細部的인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43 條 (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定에 依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日刊紙에 公告하여 行한다.

1. 本會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本會의 運營에 關한 事項

第 44 條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本會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현 주 소	임 기
회 장	성 좌 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69	1978년 12월까지
부 회 장	이 형 규	경남 마산시 양덕동 222	1978년 12월까지
부 회 장	심 정 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0-45	1978년 12월까지
전무이사	노 익 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03	"
이사(편집담당)	조 의 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
이사(총무담당)	김 계 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37-140	"
이사(재무담당)	홍 성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9-99	"
이사(기획담당)	최 남 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	"
이사(조직담당)	장 성 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82-31	"
평 이 사	최 규 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봉동 10-7	"
감 사	김 원 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동 307	"
감 사	정 기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239	"

附 則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자문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사업에 대한 자문
2. 학회 임원 선출에 대한 자문
3. 기금 모금에 관한 자문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자문
5. 기타 학회 이사회에서 요청받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전임 회장과 이에 준하는 경륜을 갖춘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해당된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대학원의 고분자 분야 교과과정과 시설 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2. 대학 및 대학원의 고분자 관련 학과의 설치 기준 및 교육 내용의 평가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3. 기사 1, 2급 및 기술사 등의 자격 시험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4. 기타 고분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학술편집위원회와 기술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학술편집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폴리머지 간행
2. 기타 학술관련도서의 발간

제 4 조 기술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과학과기술지 간행
 2. 기타 기술관련도서의 발간
- 제 5 조 학술 및 기술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각 1명
2. 부위원장 각 1명
3. 위원 10명 내외

- 제 6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7 조 학술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학술편집간사로, 그리고 기술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편집간사로 보한다.
- 제 8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제 9 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제 10 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 11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13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14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KOREA POLYMER JOURNAL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KOREA POLYMER JOURNAL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문지의 간행
 2. 기타 영문도서의 발간
-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20명 이내
-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5 조 당해년도 영문지 편집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 6 조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제 7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8 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단, 초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9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0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11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기금관리위원회 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기금의 효율적 관리
 2. 기타 학회 자산 확장에 관한 사업
-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부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하며 재무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재무위원회 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재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운영 자금의 조달
 2. 학회 기금 조성
 3. 기타 학회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의 확보
-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부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하며 재무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산학협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연구소 및 산업계 간의 협력 증진
 2. 고분자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강좌의 개최
 3. 관련 기관의 견학 및 시찰
-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기획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용어제정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용어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 과학 및 관련 분야의 용어 제정
2. 고분자 화학물의 명명법 제정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간사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간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2. 기타 학회 일상 업무의 수행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간사장(위원장) 1명
2. 총무간사(부위원장) 1명
3. 재무간사 1명
4. 편집간사 3명
5. 기획간사 3명
6. 조직간사 2명

제 4 조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한다.

제 5 조 부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평의회 규정

1. 본회 정관 제23조에 따라 평의회를 구성한다.

2.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 후보자의 제청
- 2) 학회상 시상에 관한 사항
- 3) 명예회원의 승인
- 4) 기타 주요 사항

3.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선임된다.

4.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2) 평의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6.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지부 및 분회 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둔다.
- 제 2 조 지부 및 분회는 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 제 3 조 지부는 지방별로 30명 이상, 분회는 직장별로 5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조 지부장은 지부 규약에 따라 각 지부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제 5 조 분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되 지부 산하의 분회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 6 조 지부장은 본 규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부 규약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조 지부장 및 분회장은 지부 및 분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지부 및 분회를 각각 대표한다.
- 제 8 조 지부장 및 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 9 조 지부 산하 회원의 회비는 그 3분의 1을 지부 활동비로 하고 본사가 해당 지부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납부된 특별회비는 그 2분의 1을 지부 활동비로 할 수 있다.
- 제 10 조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의 명단과 지부의 주요 업무 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1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12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문위원회 규정

(1991년 3월 14일 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 조 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진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 제 3 조 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와 사업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 제 4 조 위원회는 학회의 전문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워크샵,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2. 전문성을 가지는 뉴스레터의 발간
 3. 춘계 및 추계 연구논문발표회의 특별강연, 연사추천, 발표장의 좌장추천 및 발표장 운영에 관한 협조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 제 5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간사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 7 조 간사 및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 9 조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 10 조 위원회의 회원은 본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임회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 11 조 1.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고분자과학과기술”지에 게재한다.

제 12 조 1. 부문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후 및 년도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4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고분자분야의 국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회 정관 제6조에 따라 국제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사업)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 고분자과학과 공업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
2.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3. 기타 국제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제 3 조(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약간명(국제담당기획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의 선임방법)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임무)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초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이 규정은 1995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학회포상 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고분자 학술상 및 고분자 기술상의 시상을 실시한다.

제 2 조 고분자 학술상은 수상 대상 기간에 고분자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술적인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 3 조 고분자 기술상은 수상 대상 기간에 고분자 관련 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 4 조 시상은 매년 춘계총회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적절한 수상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5 조 시상의 대상이 되는 업적은 시상 년도의 전해부터 기산하여 2년간 이룩한 업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 학술상 및 기술상 후보자는 시상 실시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제 7 조 회장은 포상심사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제 8 조 본 규정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시상 규모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조 포상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심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심사에 임한다.

제 10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의 실시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상암고분자상 (미원유화 후원)

- 제 1 조(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상암고분자상”이라 한다.
- 제 2 조(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수상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고분자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 제 4 조(운영위원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한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회내에 “상암고분자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본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촉한다.
- 제 5 조(운영위원) 위원회 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6 조(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 7 조(위원회운영) 운영위원회는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8 조(인준)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본회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확정한다.
- 제 9 조(시상) 본 상의 시상은 매년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하며 시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증서)와 상금을 수여한다.
- 제 10 조(상금) 상금은 본 상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1981. 1. 29 개정)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단신(Notes), 속보(Communication 또는 Letters)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3. 논문은 2명의 심사를 거쳐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교정(Errata)은 편집위원장이 그 게재여부를 정한다.
4.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5.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6. 심사결과는 “채택가(무수정, 수정필요)” “채택불가”의 2종으로 구분한다.
 - (1) “채택가”항 내의 “무수정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없이 채택한다.
 - (2) “채택가”항 내의 “수정필요”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7.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필요”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8.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또는 그 이상의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 (1)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독창성이 없는 경우
 - (2)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3)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 (4)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9. 논문이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1.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가”, 다른 1명이 “채택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5항에 구애됨이 없이 학술위원장에게 제1, 2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이 “채택가”나 “채택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만일 가부판정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1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13.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14.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논문투고 규정

(1977. 1. 10. 제정, 1996. 1. 19. 5차 개정)

1.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간행되는 **폴리머**(이하 회지라 함)에 투고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은 본 회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잡지에 논문으로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의 접수일은 논문이 본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4. 논문 작성은 국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영문도 사용할 수 있다.
5. 논문의 원고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6. 논문의 서식은 가로쓰기로 하고 약 $21 \times 28 \text{ cm}^2$ 크기의 용지에 한줄 건너 한면에만 타자하며, 논문의 분량은 표와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면 이내이어야 한다.
7.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별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및 주소(논문작성에 사용한 언어에 관계없이 국문 및 영문으로 써야하며, 저자의 현 소속기관이 연구당시와 다른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 및 주소를 각주에 표시하여야 하고 대표저자 우측어깨에 †를 표시한다.)
 - (2) 국문초록(400자 이내) 및 영문초록(150단어 이내), 영문 keywords(5개 이내)
 - (3) 본문
 - (4) 참고문헌
 - (5) 그림설명
 - (6) 표
 - (7) 그림
8. 국어 논문의 경우 학술어는 원칙적으로 한국고분자학회가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분자 용어집 참고).
영어 논문의 경우 화학술어는 Chemical Abstracts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9. 모든 표와 그림의 설명에는 영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표는 약 $21 \times 28 \text{ cm}^2$ 크기의 백지에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표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체하고 표에 사용한 약어에는 정의를 주어야 한다. 모든 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예 : Table 1).
10. 그림 원본은 사진의 경우 사진 원본, 그림의 경우는 쉼트지 또는 트레이싱지(약 $21 \times 28 \text{ cm}^2$)에 깨끗이 흑색으로 그려야 하며 (Laser Printer 원본도 가능), 그림의 설명은 별지에 모아서 적어야 한다. 그림의 선의 굵기와 그림에 삽입된 글자의 크기는 약 1/2로 축소된 후에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예 : Figure 3), 그 번호를 그림의 뒷면에 연필로 적어두어야 한다.
11.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나 시료기호 등은 그것이 처음 사용된 곳에서 정의해 주어야 한다.
예 : Polyethylene (PE) 또는 solution of polystyrene in diethyl oxalate (PS/DEO)
12.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동일한 실험결과를 그림과 도표로 중복되게 표현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14. 인용된 문헌을 본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문구의 우측 어깨에 아라비아숫자로 그 인용문헌의 번호를 표시한다(예 : 이미 보고된 결과와⁵ 일치하는.....).
15. 인용된 참고문헌들은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16. 인용문헌이 학술잡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형식에 맞추어 기입하되, 잡지명은 기울임체(이탤릭체)로, 권을 표시하는 숫자는 강조체(볼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저자명, 학술잡지명, 권, 쪽 (발행년도).
인용한 잡지명을 약기하는 방식은 Chemical Abstracts의 List of Periodicals에서 채택한 것을 써야 한다.
예 : 1. M. L. Williams, R. F. Landel, and J. D. Ferry, *J. Am. Chem. Soc.*, **77**, 3701 (1955).
2. F. F. Rust and W. E. Vaughan, *U. S. Patent* 2, 392, 294 (1946).
17. 인용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다음의 형식에 맞추어 기입하여야 한다.
저자명, "책이름", 판수, 편집자명, 권, 쪽,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년도.

단, 판수 및 편집자명, 권 등에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들을 생략한다.

예 : E. Jencke, "Die Physik der Hochpolymeren", ed. by H. A. Stuart, vol. III, p. 621, Springer-Verlag, Berlin, 1957.

18. 연구가 간단하나 중요한 결과는 이를 속보(Short Communications) 또는 단신(Notes)으로 투고할 수 있다.
19. 투고시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폴리머는 고분자 과학과 기술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결과를 게재한다. **연구 논문**은 완전 논문이거나 단신 혹은 속보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신**은 제한된 내용이지만 완전한 논문으로 간주되며 **속보**에서는 급히 알려야 할 연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연구논문은 본학회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하여야 한다.

Polymer(Korea) is published bimonthly by The Polymer Society of Korea and registered as "Pollimo" in the Chemical Abstracts. **Polymer(Korea)** publishes results of fundamental and applied researches in all areas of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Contributions may be submitted as "Papers", "Notes" or "Short Communications". Instructions for authors should be strictly followed before submission of any manuscript to this journal. It is available from the Society upon request.

각 지부 임원명단 및 지부활동상황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부지부장	감 사	이 사				이 사
				총 무	재 무	조 직	섭 외	
1977. 10. 15~	이학기		이만희 김종택	김우식	이동호	김봉식 강석호 (기획)		김영기 박병각
1980~	이학기		이만희 김종택	김우식	이동호	김봉식 강석호 (기획)		김영기 박병각
1982~	이만희		김종택 장동호	김봉식	이동호			강석희 권기정 김광태 김종대 김종수 김충부 박병각 육정진 이상옥 이학기 임용진 조봉기 조 환 홍영석
1984~	김종택		장동호 김우식	이동호	김봉식			강성구 김종수 김효일 이천수 유기한 조용석
1986~	장동호	권기정	김우식 김종수	김봉식	이동호			강성구 김효일 이승조 이천수 임용진 조용석 최철준
1988~	김우식	김봉식 이승조	이천수 권기정	민경은	서길수	이원철	최인식	강성구 김효일 이동호 임용진 장보현 조용석 진왕철 장진해
1990~	김종식	안진원 정진철	이승조 이천수	이원철	김경재	박찬언	민경은	강성구 김효일 서길수 유덕향 이동호 임용진 장동호 장승현 장진해 정해동 조용석
1992~	정진철	이동호 이승조	이천수 정해동	안정호	하기룡	장진해	서관호	강성구 김경재 김정원 김효일 민경은 박찬언 서길수 서영수 이원철 조용장
1994~	이승조	이동호 정해동	민경은 이원철	강인규	박남규	서영수	진왕철	강성구 김효일 박일현 서길수 장태현 하기룡 손영호
1996~	이동호	이원철 손영호	진왕철 장보현	서관호	박남규	손태원	박일현	민경은 박이순 임무산 윤원식 오태진 박찬언 서길수 강인규 서영수 하기룡

● 활동상황보고

일 시	내 용	일 시	내 용
1977.10.15	창립총회(지부명 경북지부)	11. 9	초청 강연
1978.12.20	지부 총회	12. 1	지부 총회
1979.12.14	지부 총회	1990. 5.30	특별 강연(한만정)
1980. 4.28	Kurata 교수 초청 강연	9.15	부산지부 공동세미나 : 특별 강연 (안정호, 신부영)
12.17	지부 총회	9.24	Osaki 교수 초청 강연
1981. 4.27	캐나다 Queen 대학 C. C. Hsu교수 초청 강연	10.24	Shirota 교수 초청 강연
10.26	Nozakura 교수 초청강연	11.16	특별 강연(김성철, 김영하, 최철림)
12.10	지부 총회	11.29	지부총회
1982. 7.19	초청 강연회(이도익, 현건섭)	1991. 8.14	White 교수 초청 강연
12.10	지부 총회	9. 7	부산지부 합동세미나
1984. 6.21	특별 강연(유혁)	12.10	지부총회
7.18	특별 강연(최재홍)	1992. 1.28	본부 임원진 초도순시 및 간담회 (포항 영일대)
12.10	지부 총회	4.10	Kamachi 교수 세미나
1985. 9.25	일본 中島草夫교수 초청 강연	6.30	Connecticut 대학의 백종숙 초청 세미나
10.21	Kennedy 교수 초청 강연	7. 6	유혁 박사 초청세미나
12.20	지부 총회	12. 4	지부 총회
1986.12. 3	지부 총회	1993.10.30	경남·경북 합동세미나
1987. 7. 3	특별 강연(최경주, 김병철)	12. 6	지부 총회
8. 3	White 교수 초청 강연	1994.11.25	Y. Morishima 초청세미나
11.28	지부 총회	12. 9	지부 총회
11.19	초청 강연(김태한, 김광웅, 조의환)	1995. 5.17	북경대 Li, Qiu 교수 특별강연
12.10	지부 총회 : 지부명 개칭 - 경북지부를 대 구·경북지부로	5.27	친선 테니스 대회
1989. 2.17	초청강연	12. 2	지부 총회
10.28	영남지구 연합 학술대회	1996. 8.30	대구·경북/부산·경남 합동세미나

대구·경북 지부 정관

(1988년 1월 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본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 정관 제6조와 지부 및 분회 규정에 의거 전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통괄하고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의 운영을 도우며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 2 조(명칭) 본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 대구·경북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라고 한다.
-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시에 둔다.
- 제 4 조(회원의자격) 본지부와 회원은 본학회의 회원으로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 제 5 조(지부총회) 1.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학회의 규정에 준한다.
3. 지부총회는 재적 정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6 조(지부임원) 1. 본지부는 지부장 및 2인의 부지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지부임원은 지부평의원회의 제청을 받아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한다.
3. 지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4. 지부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부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7 조(지부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총회와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지부장의 유고 시에는 부지부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지부감사는 지부회무 및 재무상황을 감사한다.
- 제 8 조(평의원회) 1. 지부총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지부평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정하여 지부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 제 9 조(지부이사회) 1. 지부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지부이사는 지부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업무를 분장한다.
- 제 10 조(회무보고)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학회장 앞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요 사항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학회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1 조(지부시행세칙) 지부규약에 필요한 사항은 지부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2 조(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본학회의 정관과 통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경남 지부

	지부장	부지부장	고 문	감 사	이 사					이 사		
					총 무	재 무	기 획	섭 외	산학협동			
1979. 3. 17~	박천옥											
1981~	박천옥											
1983~	박천옥											
1985~	박천옥	신영조		김영길 김정곤	조원제	윤재석	이장우	하창식	박홍수	강선원 문상조 임 훈	김국중 박화술 최관용	김서근 임병창 최진석
1987~	신영조	신영조 이병섭 강희주		김서근 손진언	하창식	길옥균	이진국	서차수	박홍수	강선원 김영길 윤재석 임병창 최진석	김국중 문상조 이장우 조원제	김병규 박화술 이종광 최관용
1989~	민병권	문규열 안홍문 조원제		박찬현 김영규	신춘환	하창식	이기창	서차수	이진국	김국중 김정호 김서근 손진언	최진석 신영조 김정곤	박천옥 조현욱 송판원
1991~	조원제	김병규 김종광 안홍문		권순기 신춘환	하창식	박동규	설수덕	김한도	서차수	최진석 윤한수 서은덕 유종선 이기창 임동수 조익제 황일주 김진국 정한열 박유미	송판원 이상목 성대윤 윤구식 이장우 김무권 김치중 윤성철 민성기 조의제 박찬현	박수진 김정호 손진언 정한호 이진국 문규열 김국중 박영욱 원용돈 조현욱 박대규
1993~	김정곤	최진석 김종광 안홍문	박천옥 신영조 민병권 조의제	하창식 권순기	민성기	박찬영	김병규	문명준	서차수	이창호 신상길 김의현 김기영 송판원 강태일 정한열 윤구식 문동관 김정호 오인환	공삼택 문창하 공한국 최원중 황일주 박수진 김창수 문창권 박순옥 이상목 최문덕	윤한수 서영욱 이상덕 유종선 김국중 박대규 서은덕 박동규 배재호 김원수 설수덕
1995~	박상욱	설수덕 최진석 김정호	박천옥 신영조 조원제 김서근 김정곤	조의제 민성기	유종선	오상택	하창식		신봉석	이창호 신상길 이상덕 송판원 박수진 윤구식 박순옥 김원수 조현범 문명준 박석웅	전득주 문창하 김기영 박영욱 박대규 문창권 배재호 인진국 김병규 안홍문	손진언 서영욱 최원중 강태일 서은덕 문동관 이상목 원용돈 서차수 박창제

부산·경남 지부 규약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국고분자학회 부산·경남지부라 칭한다.
- 제 2 조(목적) 본지부는 한국고분자학회 정관에 따라 고분자에 관한 화학, 물리학, 생물학, 공학 등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시에 두고 필요할 때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3. 조사연구, 자료수입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5.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고분자공업에 관한 자문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회본부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 6 조(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본회는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 제 7 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회원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 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고분자 및 이에 관련된 과학, 기술 및 공업에 관한 학문을 배웠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 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 대학에서 정회원에 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
 3.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학교, 연구소, 도서관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또는 사업체로 한다.
 5.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 제 9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당해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10 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11 조(회원제명)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대만이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 제 12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지부장	1인	부지부장	3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기획이사	1인	이 사	7인이상
섭외담당이사	1인	산학협동담당이사	1인
감 사	2인		

제 13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전할 수 있고 보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임원의 선임방법)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 재무, 기획이사 및 섭외담당, 산학협동담당이사는 지부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5 조(지부장 및 이사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회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섭외담당이사는 국제 관계를 포함한 섭외업무를 담당하고 산학협동 담당이사는 산학협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지부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지부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지부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8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 19 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의 1/5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1 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2 조(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4 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회의 의사는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7 조(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조 제 28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들
4. 기타수입

제 29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회본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회의 의결과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32 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을 학회본부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 활동상황보고

일 시	내 용
1979. 3.17	부산·경남지부 발족
1983.12	KAIST 화공과 김성철 교수와 일본 Kyushu 대학교 Tisato Kajiyama 교수가 비공식적으로 일본 고분자학회 구주지부(이하 구주지부)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본 지부 간의 협력을 논의함.
1984.11. 2	본 지부 박천옥 지부장과 구주지부 Shogo Saito 지부장이 양 지부의 자매결연 합의서에 서명함. 아울러 제1회 고분자공동심포지움(The First Pusan-Kyushu Joint Symposium on High Polymers)을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함.
1985. 7.11	Kyushu 대학교에서 제2회 고분자공동심포지움 개최(The Second Kyushu-Pusan Joint Symposium on High Polymers) 매 2년마다 심포지움을 개최기로 함.
1987. 5. 3	제주대학교에서 제3회 고분자공동심포지움 개최. 한국섬유공학회 부산·경남지부와 일본섬유학회 서부지부와의 제1회 섬유공동심포지움(The First Pusan-Seibu Joint Symposium on Fibers)을 합동으로 개최함.
1989. 8.16	일본 Kyushu대학교에서 제4회 고분자공동심포지움 및 제2회 섬유공동심포지움 합동 개최
1991.10.29	부산대학교에서 제5회 고분자공동심포지움 및 제3회 섬유공동심포지움 개최. 용어를 '91 Pusan-Kyeongnam/Kyushu Joint Symposium on High Polymers and Pusan-Kyeongnam/Seibu Joint Symposium on Fibers로 함.
1993. 6. 4	일본 Miyazaki 대학교에서 제6회 고분자공동심포지움 Pusan-Kyeongnam/Kyushu Joint Symposium on High Polymers and Pusan-Kyeongnam/Seibu Joint Symposium on Fibers를 개최 함.
1995.11. 8	한국신발연구소에서 제7회 고분자공동심포지움 개최. 용어를 통일하여 '95Pusan-Kyushu Joint Symposium on High Polymers and Textiles로 함.
1997.11	일본 Kumamoto 대학교에서 제8회 고분자공동심포지움 Kyushu-Pusan Joint Symposium on High Polymers and Textiles 개최 예정.

충 청 지 부

	지부장	부지부장	자문위원	감 사	이 사				이 사
					총 무	재 무	기 획	섭 외	
1981. 11. 20~	맹기석	최남석 남효승		한순교 신대현					주혁중 박인환 박보영 여종기 송해영
1984~	맹기석	최남석		한순교 신현주	주혁중	정진철	여종기	송해영 (편집)	주혁중 박인환 박보영 여종기 송해영
1986~	민병권	신현주		한순교 여종기	주혁중	한환복	윤병일	이해방 (조직)	박근하 정진철 김갑종 박홍배 이서봉 문규열 맹기석
1988~	맹원기	송해영		맹기석 민병권	허원준	김청수	최길영	홍명효	이서봉 변재황 이해방 문학중 여종기 신동근 이보성 주혁중 정 발 한환복 정진철
1990~	송해영	이해방		맹기석 이서봉	주창환	김청수	이규호	임정택	최길영 변재황 여종기 신동근 이보성 주혁중 정 발 한환복 김공수
1992~	이해방	민태익 여종기 주혁중	맹기석 이서봉 김성철	송해영 신동근	이진호	김청수	박정기	주창환	강신의 공종수 김갑종 김공수 김오곤 김휘중 이경우 이규호 이수민 정동진 정 발 정인재 주창환 조용수 최길영
1994~	김성철	김경원 김휘중 여종기	맹기석 이서봉 이해방 송해영	김공수 정동진	박오옥	최길영	홍성권	원호연	길기승 김학주 박홍원 송병규 신재섭 이광섭 전창림 정 발 조용수 최창현 허수영 홍순용
1996~	민태익	정동진 이병형 심홍구		주혁중 최길영	원호연	이재락	이기운	송헌식	길기승 김학주 박홍원 송병규 신재섭 이광섭 정 발 조용수 최창현 허수영 유진녕 곽태훈 박오옥 홍성권 박인하

충청지부규약

(1995년 1월 1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본지부는 한국고분자학회 정관에 따라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명칭) 본지부는 한국고분자학회 충청지부(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3.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고분자 공업에 관한 자문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 조(분회) 본회는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 제 6 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한국고분자학회 회원으로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인근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 제 7 조(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한국고분자학회 정관 제8조에서 구분한 대로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 8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당해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이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9 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10 조(회원 제명) 본회 회원의 제명은 한국고분자학회 정관 제11조에 준한다.

제 3 장 임 원

- 제 11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 | | |
|------|----|------|--------|
| 지부장 | 1인 | 부지부장 | 3인 |
| 총무이사 | 1인 | 재무이사 | 1인 |
| 기획이사 | 1인 | 이 사 | 15인 이내 |
| 섭외이사 | 1인 | 감 사 | 2인 |
- 제 12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3 조(임원의 선임방법)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및 섭외이사는 지부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 14 조(지부장 및 이사회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 15 조(지부장 직무 대행) 지부장의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6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지부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17 조(자문위원) 본회 지부장의 자문역할을 위하여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중요 사항

제 19 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4/4 분기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총회 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1 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정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 23 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24 조(이사회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이사회회의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6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6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타수입

제 27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활동상황보고

일 시	내 용	일 시	내 용
1981.11.20	충남지부 발족	1989.12. 8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차기지부임원 선출-지부장 송해영 박사 (충남대학교)
1986. 1.	초대 및 2대지부장-맹기석 교수(충남대학교) 지부장 선출 : 지부장 민병권 박사 (한국화학연구소)		송년회 겸 세미나 개최-연사 김순식 박사 (제일합섬연구소)
1986. 9.26	세미나 개최-연사 : 김계용 교수(한양대)	1990. 1.19	신년하례식 및 세미나 개최 강홍렬 박사(표준연구소)
1987. 2.19	학술세미나개최-박정옥 박사(력키중앙연구소)	5.30	세미나 개최-이문수 박사(충남대)
6.11	학술세미나개최-윤도영 박사(IBM 사)	8.16	세미나 개최-Dr. F. N. Kelly(Akron Univ.)
12.15	학술세미나개최-홍순영 박사(력키중앙연구소)	11. 6	임시 이사회 및 총회 세미나 개최-Stanislaw Nespurek 박사 (Head, Dept. of Molecular Electronics, Czechoslovak Academy of Science, Prague)
12.15	지부 정기총회 제4대 지부장 및 감사 선출 지부장-맹원기 소장(한국화약그룹중앙연구소)	1991. 1.21	신년하례식 및 세미나개최-연사 김은영 박사 (KIST)
1988. 1.18	신년하례식 및 이사회 학술세미나 개최-서정현 교수(서울대)	4.30	학술세미나 개최-Dr. Socrates P. Papas
2.26	학술세미나개최-전용구 박사(ADD) 지부정관 변경 심의	10. 1	학술세미나 개최-이서봉 박사 (한국화학연구소)
5.20	학술세미나개최-Dr. Brich Fitzer (서독 Karlsruhe대 교수)	12. 9	이사회 및 정기총회 • 차기임원선출-지부장 이해방 박사 (한국화학연구소) • 학술세미나 개최-윤도영 박사 (IBM 연구소)
5.28	학술세미나개최-박이순 박사(경북대 교수) 친선체육대회 개최	1992. 1.20	신년하례식 및 학술세미나 개최-윤능민 교 수(서강대)
9.30	학술세미나개최-원호연 박사 (한국화약그룹종합연구소)	4.14	학술세미나 개최-한창대 교수 (미국 Polytechnic Univ.) 충청지부 Newsletter 발간 년 4회 발간 (분기별 발간)
10.	이사회 개최	12.21	이사회 개최
12.20	송년회 겸 학술세미나 개최-이명훈 박사 (한국화학연구소)	1993. 1.26	신년하례식 및 세미나 개최-김동한 교수 (포항공대)
1989. 1.11	신년하례식 및 세미나 개최-장세현 교수 (서울대)	2. 9	특별강연-Prof. Oleg M. Nefedov(Russia Academy of Science)
1.18	제1회 이사회 개최	8.27	특별강연-한창대 박사(Akron 대)
3.30	학술세미나 개최-Prof. Dr. Tsuchida Eishuo(Waseda Univ.)		
4. 7	이사회 개최		
7.13	이사회 및 세미나 개최 • 지부명 개칭 : 충남지부를 충청지부로		

일 시	내 용	일 시	내 용
1993.12. 2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차기임원 선출-지부장 김성철 교수 (KAIST) 특별강연-최삼권 박사(KAIST) 이사회 및 정기총회 충청지부 Newsletter 발간 년 2회 발간	1995. 2.28	학술세미나 개최-윤도영 박사 (IBM Almaden Research Center)
1994. 1. 6	학술세미나 개최-R. Chujo 교수 (일본동경대)	3.23	제1회 이사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Takeo Saegusa 박사(Kansai Research Inst.)
1.11	제1회 이사회 개최	4. 3	학술세미나 개최-Pierre J. Carreau 박사 (Director of Center of Research Applica- tion on Polymers)
1.25	신년하례식	5.10	학술세미나 개최-Paras N. Prasae 박사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3. 2	제2회 이사회 개최	5.25	학술세미나 개최-성낙호 박사 (Univ. of Tufts)
6.16	제3회 이사회 개최 학술세미나 개최-J.L.White교수(Akron대)	1. 5	제2회 이사회 개최
7.19	제4회 이사회 개최	8.10	제3회 이사회 개최
8. 2	학술세미나 개최-윤도영 박사 (IBM Almadem Research Center)	10.17	학술세미나 개최-Jozsef Karger-Kocsis 박사(Univ. of Kaiserslautern)
8.19	제5회 이사회 개최	11. 2	학술세미나 개최-John K. Gillham 박사 (Univ. of Princeton)
9. 2	제1회 고분자기술 심포지움 개최 (연사 7인)		충청지부 Newsletter 발간 (년 3회 발간) 지부 분회 추가 및 재정비 (20개 분회)
10. 7	학술세미나 개최-Guy C. Berry 박사 (Carnegie Mellon Univ.)	11.10	충청지부 정기총회 • 차기임원 선출-지부장 민태익 박사 (한화그룹종합연구소)
11. 1	제6회 이사회 개최 충청지부 Newsletter 년 2회 발간		제2회 고분자기술 심포지움 개최(연사 7인)
12. 8	지부 정기총회 개최 맹기석 교수 정년퇴임 기념 초청강연회, 연구개발성공사례발표회 지부 분회 정비 (19개 분회)	1996. 2. 7	학술세미나 개최-Takeo Saegusa 박사 (Kansai Research Institute, Executive Vice President)
1995. 1.26	신년하례식	6.27	학술세미나 개최-Kazuo Koseki 박사 (후지전기 환경 및 에너지 Lab. 팀장)
2. 6	학술세미나 개최-J. Bluckwell 교수 (Univ. of Case Western Researve)	8. 9	학술세미나 개최-Prof. Menachem Lewin (Polytechnic Univ.)

호 남 지 부

	지부장	부지부장	감 사	이 사				이 사
				총 무	재 무	조 직	섭 외	
1983. 6. 18~	김재문	노인기 김완영	조재홍 김경원	조병욱	김수경	임균태 (기획)		김재형 위석양 홍석표 안종열 소재웅 이용호
1986~	김완영	노인기	이기종 이희연	조병욱	김병규	정봉우 (편집)		김재문 김재형 조재홍 홍석표 조순채 홍덕표 김학주
1988~	조성휴	조순채 김재형	김수경 이희열	김선일	문 원			조성휴 김재형 김완영 조재홍 노인기 김천식 이희연 김척기 이기종 정창남 문 원
1990~	김재문	조순채 박기주	이종문 신성의	채규호	조성효			김재문 노인기 김완영 이기종 조재홍 정창남
1992~	김천식	김척기 조성효 박기주 이종문	문 원 정창남	오세철 박성수				김재문 채규호 조순채 김완영 조병욱 신성의 박병규 강형술 이희연 도춘호 이기풍
1994~	조순채	조성효 박지주 이종문 박병규	도춘호 김진봉	이대수	김환철			김재문 김천식 조병욱 김완영 이희연 정창남 채규호 김수경 오세철 문 원
1996~	조성효	오세철 이희연 조병욱 채규호	유지강 이대수	김수경	김진봉	정창남 김환철	이종문 도춘호	고진환 김완영 김재문 박기주 유봉열 이강천 임병덕 문 원 임성담 조순채 조종수 이상화

● 활동상황보고

일 시	내 용	일 시	내 용
1984.10.	고분자학회 추계총회, 전남대학교	1996. 8. 9-10	Dr. Shunichi Yamajaki, Japan Auto- mobile Research Institute, Prof. J. M. Verznaud, Jeanmonnet Saint-Etienne University 초청간연, 전남대학교
1990.10.19-20	고분자학회 추계총회, 전남대학교	1996. 9.13	호주 U. of New South Wales 대 R. P. Burford 교수 및 G. M. Moran 교수 초 청강연, 전남대학교
1992.10. 9-10	고분자학회 추계총회, 전북대학교		
1995. 6.23	제1회 석유화학강좌(폴리올레핀을 중심 으로), 순천대학교	* 기타 : 초청강연을 연 1회 이상 개최하였음.	
1996. 6.21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한 산·학·연 협동 세미나 개최, 전남대학교		

호 남 지 부 규 약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 정관 제6조와 지부 및 분회 규정에 의거 전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통괄하고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의 운영을 도우며 본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 2 조(명칭) 본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 호남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라 한다.
-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북도에 둔다.
- 제 4 조(회원의자격) 본지부와 회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전라남북도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 제 5 조(지부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학회의 규정에 준한다.
3. 지부총회는 참석회원으로서 구성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6 조(지부임원) 1. 본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 | | |
|-------|-----|------|--------|
| 지 부 장 | 1명 | 부지부장 | 1명 |
| 이 사 | 약간명 | 감 사 | 2명 |
| 분회장 | 약간명 | 고 문 | 약간명 |
| | | 평의원 | 20명 이내 |
2. 지부임원의 선출은 지부이사회에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선임된 지부장은 본 회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4. 지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지부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부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7 조(지부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총회와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지부장의 유고시에는 즉시 본학회에 보고하여 지부이사회가 선임한 임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지부감사는 지부회무 및 재무상황을 감사한다.
- 제 8 조(평의원회) 1. 지부평의원회는 지부총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부장, 부지부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평의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 조(지부이사회) 1. 지부이사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지부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지부이사는 지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업무를 분담한다.
- 제 10 조(회무보고)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학회장 앞으로 보고한다.
- 제 11 조(지부 시행세칙) 지부규약에 필요한 사항은 지부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2 조(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본 학회의 정관과 통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분자전자부문위원회 연혁

일	시	내	용
1991. 6.		제1차 결성준비모임 및 정관작성	
		참석인: 김정엽 이서봉 이후성 박영우 임승순 진정일	
1992. 2. 20		창립총회, 초대위원장 김정엽 박사	
		기념강연회	
		연사: 진정일 박영우 안중우 권영수 김진백 윤문수	
7.		운영위원회 구성	
		임승순(간사) 김낙중 손태원 안광덕 이해원 이희우	
9. 25		분자전자심포지움	
		연사: 강원 김재호 오응주 최한용 김성주 신동명 이신두 최동훈 우성원	
1993. 11. 26		부문위원회 총회 제2대 위원장 진정일교수	
		분자전자심포지움	
		연사: 안광덕 G. G. Wallace 공명선 김병규 이해원 이광섭 전일철	
		운영위원회 구성	
1994. 3. 1		김낙중(총무) 권영수 김동호 김병규 김정수 김장주	
		김철희 박준원 우정원 이광섭 이명수 이명훈 이범중 이해원 이희우 한양규	
3. 25		특별세미나(연사: 송기국, 이명훈)	
4. 16		부문위원회 총회 및 논문발표회	
10.		부문위원회 총회 및 논문발표회	
1995. 3. 25		분자전자심포지움	
		연사: 김낙중 박경윤 심홍구 이신두 이해원 임동권	
4. 12		초청강연(연사: Masamichi Fujihira)	
4.		부문위원회 총회 및 논문발표회	
7. 5		초청강연(연사: 손세환)	
10.		부문위원회 총회 및 논문발표회	
12. 5		한국-헝가리 공동심포지움	
		주제: 액정고분자	
		연사: 이종천 김병규 이신두 L. Bata A. Buke K. Fodor-Csoba	
1996. 2. 23		부문위원회 총회 제3대 위원장 이후성교수	
		분자전자 특별심포지움	
		주제: 전기특성고분자	
		연사: 이후성 김동영 이창진	
3. 23		분자전자 특별세미나 (연사: 주진수, 차명식)	
4. 20		부문위원회 총회 및 논문발표회	

분자전자부문위원회 세칙

명칭 및 목적

제 1 조 본회는 한국고분자학회 분자 전자학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본 위원회는 분자 전자학 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 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회 원

제 3 조 고분자학회 정회원은 본 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가입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입회원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4 조 본 위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위원회 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위원회 학술활동에 참가한다.
3. 본 위원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다.

제 5 조 본 위원회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비 징수시 일정기간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활 동

제 6 조 본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 7 조 본 위원회는 국내외 저명 과학자를 초빙하여 심포지움이나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 기타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 9 조 본 위원회는 위원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한국고분자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조직 및 임원

제 10 조 본 위원회는 1인의 회장과 1명의 간사와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제 11 조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한국고분자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위원장은 간사와 운영위원 약간명을 지명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4 조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해 임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15 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 운영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6 조 본 위원회 총회는 본 학회 춘계총회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및 인준한다.

제 17 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1년 9월일부터 시행한다.

2. 초대 위원장은 본 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 회원 10명 이상이나 또는 위원장에 의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여 본 위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의 연혁과 활동

한국고분자학회내에 의료용고분자 연구의 활성화와 구심점을 만들기 위하여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는 김은영 회원 외 50인의 발기인에 의해 설립하기로 협의하고, 1993년 10월 6일 한국고분자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1993년 10월 8일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1993년 10월 9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초대 부문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성용길 교수(동국대)를 선출하였고, 간사에 정서영 박사를 추천하여 인준을 받았다. 그 동안 의료용고분자분과위원회는 의용생체재료연구회와 공동으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발표회, 그리고 국제 학술 공동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산·학·연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의 학술정보를 교환, 토론하는 모임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와같은 모임의 시작은 한국화학연구소에서 1993. 8.12~13 양일에 걸쳐 제1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materials and Drug Delivery(ISBD)를 개최하였고, 1994.10.25~26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2회 ISBD를, 1996. 7. 4~5에는 한국화학연구소에서 제3회 ISBD를 개최하였다. 특히 제3회 ISBD에는 Society for Biomaterials의 역대 2명의 회장, Allan Hoffman(Washington 대), James Anderson(Case Western 대)과 American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Scientists(AAPS) 회장이었던 Joseph Robinson(Wisconsin 대)과 역대 세계생체재료학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두분 Joseph Andrade(Utah 대)과 김성완 교수(Utah 대)를 비롯 최초의 Biomaterials 교재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Biomaterials-An Introduction" 저자인 박준부 교수(Iowa 대)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 21명의 논문발표와 200여명이 참가한 모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용고분자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seminar 개최가 이루어져 왔으며 학회내 부문위원회 논문발표수가 많이 증가하여 '95, '96년도 2년에 걸쳐 발표된 총 논문수가 Oral 52편, Poster 62편으로 총 116편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간 부문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차국현 교수(서울대), 박기동 박사(KIST), 육순홍 박사(한국화학연구소)의 봉사없이 오늘의 부문위원회가 있을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국내활동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국외학회활동, Society for Biomaterials, Controlled Release Society, American Chemical Society 등에 꾸준한 논문발표로 우리의 연구활동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94년 과학의 날에는 한국화학연구소의 이해방 박사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과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의료용고분자 전공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재료학(고분자, 세라믹, 금속), 약학, 의학, 공학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년 9월 20일 한국생체재료학회 창립총회 및 symposium을 KIST에서 거행하였으며, 초대회장에 김은영 박사(KIST)를 선출하여 우리나라 생체재료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전세계 인구의 자연증가와 식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의료시설의 확충에 힘입어 국민보건과 관련된 의료관련 산업은 꾸준히 발전될 것이며, 이에따라 의료산업의 필수소재인 생체재료의 발전은 더욱 요청되고 있다. 환자들의 질환 중에서 수술이나 약리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고, 이식 등의 임상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인체장기들은 인공장기로 대체하여 인체기관의 기능을 대신하려는 연구가 재료학(고분자, 세라믹, 금속), 약학, 생화학, 의학, 공학분야 전문가들의 협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약물의 부작용의 최소화화 효율적인 약물전달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의료용고분자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므로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며 이들의 역할이 여러 전공분야 연구 및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용고분자연구 부문위원회 세칙

-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국고분자학회 의료용고분자연구 부문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 제 2 조(목적) 본 위원회는 의료용고분자 연구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회원) 위원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제 4 조(권리와 의무)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위원회 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위원회 학술활동에 참가한다.
 3. 본 위원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다.
- 제 5 조(자격상실) 본 위원회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비 징수시 일정 기간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은 상실한다.
- 제 6 조(활동)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년 1회 이상의 학술세미나 개최
 2. 국내외 저명 과학자를 초빙하여 심포지움이나 워크숍 개최
 3. 기타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수행
- 제 7 조(임원) 본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명의 간사 및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 제 8 조(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 9 조(간사 및 운영위원) 위원장은 간사 1명 및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 제 10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11 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본 위원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위원회 특별한 학술 활동을 위해서 임시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3. 운영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 제 12 조 본 위원회 총회는 년1회 본 학회 춘계총회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반사항을 인준한다.

부 칙

1. 본 세칙의 개정은 본 위원회회원 10인 이상 또는 위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위원회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1993년 10월일부터 시행한다.